인권정보자료실
CPh1.71

2001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IPLeft

2001년 활동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정보공유연대 CPh1.71 IPLeft

2001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IPLeft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1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소개 / 4
대표인사말 / 5
2001년 활동평가 및 활동개요 / 6
2002년 활동계획안 / 9

■ 제 1장 IPLeft 선언문

IPLeft 선언문 / 12
IPLeft 선언문 토론회 / 21

■ 제 2장 디지털 저작권

활동개요 / 30
성명서 :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31
성명서 :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 32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의 지형과 이데올로기 · 오병일 / 33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남희섭 / 37
디지털시대,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 오병일 / 39
[참고자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이동연 / 42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 49

■ 제 3장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활동개요 / 158
삼성전자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각에 대한 성명서 / 159
토론회 :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 161
    발제1 : 비즈니스방법 특허와 경쟁정책 · 김병일 / 161
    발제2 : 비즈니스방법 특허의 쟁점 · 남희섭 / 170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의 소장 / 193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준비서면(2) / 205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1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 제 4장 생명·의약품과 특허

활동개요 / 220
성명서 :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221
성명서 :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223
공개 서신 :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226
2001 민중의 복지 노동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 발제문 :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 남한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남희섭 / 230
성명서 : 노바티스의 글리백 공급 중단에 대한 성명서 / 242
특허권과 인권 - 글리백 사건을 중심으로 ·남희섭 / 245

■ 제 5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 문제점과 대안

활동개요 / 252
성명서 :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25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 문제 ·오병일 / 255
2001년 특별단속을 정치적으로 읽기 ·원낙연 / 260
한국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천국인가? ·김인수 / 265
소프트웨어 생산/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오병일 / 272

■ 제 6장 MS 독점문제와 OS 사회화

활동개요 / 280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281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자료집 / 283
발제1 : 윈도XP와 닷넷,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이혁 / 284
발제2 :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오승한 / 290
발제3 : 정보공유운동과 운영체제의 사회화 ·홍성태 / 304

2001년 활동자료집

■ 제 7장 입법운동

활동개요 / 312
의견서 :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313
의견서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316
의견서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320
성명서 :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326
기고글 :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남희섭 / 328
기고글 : 디지털 콘텐츠법 문제많다 ·남희섭 / 329
기고글 : '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홍성태 / 330
[참고자료] 위험한 디지털 콘텐츠법' ·박성호 / 331

■ 제 8장 기타 활동자료

제 1회 정보운동포럼 자료집 / 334
진보넷 강좌 : "정보화와 인권"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박성호, 남희섭, 김영식, 주철민 / 354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 & 2002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발제문 :
디지털시대와 지적재산권 ·남희섭, 김인수 / 381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1년 활동자료집
발행일 : 2002년 3월 1일
발행인 : 홍성태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정보공유연대 IPLeft
연락처 : 02-774-4551
홈페이지 : http://www.ipleft.or.kr (한글), http://www.ipleft.org (영문)

정보공유연대 IPLeft 소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적재산권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비판, 현실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 대안적인 지적재산권 제도, 카피레프트 운동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모아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도서출판 이후, 2000년 8월)'를 발간하였으며, 그동안의 여러 활동과 문제의식을 모아 'IPLeft 선언문'(2001년 1월)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IPLeft는 지적재산권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들을 이슈화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스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2001년 5월),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2001년 4월), '글리벡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참여하여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권 실시 청구(2002년 1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제 활동으로는 ICANN 요코하마 회의(2000년 7월)에 참가하였고,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2001년 11월) 등 지적재산권 관련 행사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IPLeft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 형태의 모임에서 조직적인 단체로 거듭나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2년 2월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이름과 조직의 형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현실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인해 사회 계층간, 국가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우려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정보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입장의 발표 및 정책 생산, 자료의 발간, 이슈 파이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한글), http://www.ipleft.org(영어)와 메일링리스트(ip@list.jinbo.net)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해 논쟁적인 토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보공유와 정의

세상의 모든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정보의 독점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나보다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의 이러한 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그 사적 소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단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의는 더 많은 돈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공유는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정보의 공유는 정의로운 정보사회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가을부터 정보의 공유를 위한 활동을 펼쳐온 공유지적재산권모임이 이제 정보공유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이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탐구하고, 지적재산권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지적 산물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가 있으며, 그런만큼 정보의 공유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의로운 정보사회를 세우기 위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보화가 '정보제국주의'와 '승자독식의 사회'라는 디스토피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2월 20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 표 홍 성 태

2001년 사업평가 및 활동개요

2001년 평가

1) 사업평가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윈도XP 문제점과 OS 독점반대 토론회' 등 2001년 사업은 대체로 잘 진행되었으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 운동, 단행본 발간, Anti-MS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기로 하였으나,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의 경우, 근본적이고 새로운 입법으로 할 것인지, 현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것이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단행본 발간의 경우,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집필작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획 단계부터 단행본의 '의의'에 대한 '강한 합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책임지지 못할 일에 대해서 '대충' 합의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기획과 의의에 적극적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Anti-MS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담당자의 책임 방기와 함께,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물고 늘어질 주체가 불분명하지 않았나 합니다. 어쨌든 기획만 나오고 수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 IPLeft 의 정체성

IPLeft는 구성원이나 활동방식에 있어서 '전문가 모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IPLeft 활동이 대중적인 수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대응해야할 경우도 많습니다. 즉 IPLeft는 전문성을 갖아야 하는 동시에, 전문가 내에 머물러 있는 이슈를 대중화(물론 IPLeft가 상정해야할 대중의 풀이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켜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 학습이 필요하며, 대중성을 갖기 위해서 선전, 홍보 등의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현재 한계를 절감하는 부분이 바로 '활동력'입니다. 상근자에 대한 요구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3) 활동력의 한계 속에서 필요한 사업 방식 : 끈질긴 대응과 광범한 입장 표명

현재 IPLeft는 대응해야할 사안들은 많은데 활동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찔러보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중심 활동을 정하고, 적어도 그 사안만큼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식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활동력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 정도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MS-한통 제휴, 링크 저작권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없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의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한 IPLeft의 해석을 끊임없이 내는 것은 사회적인 비판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4) 조직 :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IPLeft 의 문제의식이 사회 일반은 차치하고, 사회운동 내에서조차 얼마나 공감을 얻고 있는가? 첫째는 전문성이 너무 강해서 어렵다는 이유로, 둘째는 사회의 일반 통념을 단체 활동가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공감대는 그렇게 넓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확대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상적 연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검열반대공동행동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혹은 단발적으로 여러 사회단체들과 어떻게 연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2001년 사업 일지

* 주요 대응 사안 : 소리바다 등 디지털 저작권 문제,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생명·의약품 특허, 윈도XP 반대와 MS독점문제, 국내 법안(디콘법, 저작권법)
* 국제회의 포함 9개의 토론회 (공동)주최, 참여
* 정보운동포럼 및 정보운동강좌에 참여
* 성명서, 의견서 등 11건 발표 (공동 포함)

- 1. 13 : [토론회] IPLeft 선언문 토론회
  http://cham.jinbo.net/maybbs/view.php?db=ip&code=view&n=2&page=1
- 2. 10 : [의견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http://cham.jinbo.net/maybbs/viewgongji.php?db=ip&code=notice&n=1&page=1
- 2. 10~11 :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참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워크샵 담당)
  http://networker.jinbo.net/forum/
- 2. 12 : [성명서]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declar2.html
- 2. 20 : [성명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http://freeinternet.jinbo.net/declare.html
- 3. 17 : [토론회] '인터넷 비지니스 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jinbo.net/maybbs/view.php?db=www&code=bm&n=3&page=1
- 3. 22 : [성명서]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http://cham.jinbo.net/maybbs/viewgongji.php?db=ip&code=notice&n=5&page=1
- 4. 6~20 : [온라인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http://freeinternet.jinbo.net/
- 4. 21 : [토론회]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 8. 14 :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http://freeinternet.jinbo.net/declare2.html
- 8. 24 : [성명서]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http://www.jinbo.net/maybbs/viewgongji.php?db=www&code=nwnotice&n=13&page=3

- 9. 11 : [성명서] '특허에 의한 살인' 매일 37,000 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http://www.jinbo.net/maybbs/viewgongji.php?db=www&code=nwnotice&n=17&page=3
- 9.17~10.19 :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에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수) 4회 강의
  http://networker.jinbo.net/education
- 9. 18 : [기자회견/공개서신] 지적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http://list.jinbo.net/ip/msg01756.html
- 10. 10 : [토론회]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http://www.jinbo.net/maybbs/viewgongji.php?db=www&code=nwnotice&n=19&page=3
- 10. 26~28 제1회 민중의 복지,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에 참가, 발표
- 11. 1 : [성명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http://www.jinbo.net/maybbs/viewgongji.php?db=www&code=nwnotice&n=25&page=4
- 11. 8~10 :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가, 발표
  http://asia-ir.jinbo.net
- 11. 12~14 :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회의에 참가, 발표
  http://lmedia.nodong.net
- 11. 27 : [의견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http://cham.jinbo.net/maybbs/viewgongji.php?db=ip&code=notice&n=7&page=1
- 12. 3 :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http://www.jinbo.net/maybbs/viewgongji.php?db=www&code=nwnotice&n=38&page=5
- 12. 5 : [입장] 노바티스의 글리벡 공급 중단을 규탄한다!
  http://www.jinbo.net/maybbs/viewgongji.php?db=www&code=nwnotice&n=39&page=5
- 12. 5 : [토론회] 윈도 XP 문제점과 OS 독점반대 토론회
  http://cham.jinbo.net/maybbs/viewgongji.php?db=ip&code=notice&n=8&page=1

국내외적으로 확장되는 지적재산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터

2002년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2002년을 관통하는 지적재산권 정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확장'이다. 올해에는 작년에서 더 나아가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해 더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소리바다 소송,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등 작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 디콘법이 시행될 것이며, 1월 4일 시작된 도메인분쟁조정서비스를 계기로 도메인분쟁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될 것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2월 중에 심의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작년 정기국회 때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도서관 면책조항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2월 중에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청에 강제실시권 발동을 청구할 지에 대해 환자 단체와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에 논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여름에는 삼성전자 원격교육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과 소리바다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 디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 중에 저작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저작권법도 이 때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저작권 다툼과 소송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로 확대하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특허실체법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의 각료선언문에서 앞으로의 숙제로 남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가 TRIPs 이사회(council)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특허권의 강제실시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한편 'TRIPs 협정과 건강권'에 대한 각료선언에서 밝힌 '건강권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른 분야의 지적재산권에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지속적인 고민과 국제적인 연대가 요청된다.

2002년 사업 계획

2001년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재권 이슈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 왔지만, 그 대응이 다소 즉자적이고 수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성 아래, 2002년에는 관련 이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정

세인식과 대응 전략을 가지고 관련 이슈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IPLeft의 독자적인 사업진행보다는 국내외 관련 단체나 전문가 집단과 협력 및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 저작권법 개정 청원 운동

이용자의 권리를 점차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반대 및 저지 투쟁에 힘쓰는 한편, 공정이용 조항을 현행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 청원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법률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네티즌들 사이에도 대중적인 논의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 국제연대사업

지적재산권은 많은 부분이 국제 조약으로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WIPO/TRIPs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따라가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제3세계 정보운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대사업을 통해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 APC 등에 소속된 단체들과 'IPLeft-Asia' 또는 'IPLeft-Third World'를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국내 지재권 관련 이슈 대응

올해는 국내에서 지재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IPLeft에서는 '국내사업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리바다,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등의 판결의 추이를 주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계획을 내놓을 것이며, 디콘법, 저작권법 등의 시행에 맞추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려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글리벡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과 특허 문제, 더 나아가 생명공학과 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

4. Copyleft 및 Anti-MS 운동

작년 12월 주최했던 '윈도XP 문제점과 OS 독점문제 토론회'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본격적인 Anti-MS 운동과 OS 사회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운동이 비단 한 기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책과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경제, 법률 등 다방면에 걸친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IPLeft는 Copyleft 운동과 소프트웨어 정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개입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나 경제적, 법률적 문제 등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5. 조직 및 내부 역량 강화 사업

국내외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점점 IPLeft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을 운동범위로 하고 있는 IPLeft로서는 새로운 활동가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현재 내부 활동가들도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자기반성이 있다. 현재 IPLeft는 내부 활동가들을 조직화하여 활동력을 극대화하는 것과 새로운 활동가를 충원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외적인 사업 외에도 활동력 증강 및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및 자원 활동가를 모집할 예정이며, 여러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공개 세미나를 여는 등의 조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지식공유 시스템인 위키위키(wikiwiki)도 도입할 예정이다.

〔네크워커 2002년1월호〕

제 1장 IPLeft 선언문

IPLeft 선언문 / 12
IPLeft 선언문 토론회 / 21

IPLeft 선언문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문은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IPLeft 회원들의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자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는 어떠한 실천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며,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이 선언문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최초 작성일 : 2000. 12. 9

No Copyright, Just Copyleft!! 정보공유연대 IPLeft

IPLeft 선언문 Version 1.0

이 선언문의 이용, 복사, 재배포를 권장합니다. 가능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언문의 변경을 원하거나 의견이 있는 분은 IPLeft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총론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

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돈'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현실 사회로 끌고 들어올 때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첫째,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합리성과 배타적 소유욕과는 얼마의 거리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무한 이윤추구의 욕망)과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산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을 보장하는 체제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한다는 명분아래 보장되는 배타적 소유권과 정보의 공유적 특성 사이의 모순 역시 계속될 것이다.

둘째, '생산(또는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적 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지적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소박함이 아니라, '독점적 무한 이윤'에의 '무한 욕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누/리눅스(GNU/Linux) 시스템의 예에서도 보듯이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또는 근본적인 대안과 현실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우리는 대안적인 사회가 저 너머 어디에 존재하는 구체화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지적재산권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 대안은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적 투쟁'으로 녹여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래의 각론 역시 근본적 변혁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상황의 고려 속에서 아슬아슬한 타협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족스럽게 내놓은 것은 아니다. 또 이 선언문에서는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를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의식과 경제체제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대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의 운동은 현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제시, 대안적인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과 실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현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모든 실천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Ⅱ. 기본관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국가기구,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 등 '공적 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적이용,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정보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2)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5)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각 국가 및 일국 내의 자치 공동체는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다.

2)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각론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 공적 정보의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망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여,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마저도 소수에게 독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연구, 비평, 비판, 취미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시(詩) 동호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이 경우에는 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4.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표현,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같이 비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 홈페이지의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이용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의 사례에서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6년 9월,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주)큰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 측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6.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사방지를 위해 암호를 설정하였거나, 복사방지코드를 삽입한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적 복제,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공정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DVD-CSS(DVS Content Scrambling System)의 복제방지 해체 프로그램인 DeCSS의 제작 및 배포는 리눅스에서 DVD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DeCSS를 배포하고 있는 2600.co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DVD 복제제어연맹(DVD-CCS)의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른 정당한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통신망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p3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냅스터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냅스터의 사업은 단지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저작권과 관계되어서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사적 이용을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계없는 다른 파일의 교환마저 가로막게 된다. 냅스터라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행위를 침해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8. 신지적재산권

이른바 '신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무형의 생산물,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투자의 보장'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이러한 새로운 대상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9.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

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0.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속도에서는 50년 이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단지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상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사업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관련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서 그 보호기간(20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의 원클릭 쇼핑기술 특허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에 대한 특허 등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기술은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장 없이도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기술의 특성상 오히려 특허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12. 인터넷도메인(Internet Domain) 분쟁과 상표권 등 표지에 대한 권리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상의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지(상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는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 상호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 관할권이 분명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별국가의 정책은 자국의 법, 제도와 인터넷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그의 일부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는 분리, 확인된 것이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 확인된 생명체의

일부(예를 들어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생체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4.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이를 이용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인간과 환경의 위해성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런 문제들이 의심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는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과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연구와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명에 대해 윤리 및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없이 특허권을 허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만을 고려한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공중위생에 반하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술, 법 및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환경 및 윤리,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제안한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 및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 기구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의 특허성 여부도 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

15. 농부의 권리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농부의 권리, 즉 종자를 수확하고, 저장하고, 파종할 수 있는 권리가 식물 및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이름없는 농부들의 개인적, 집단적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기술 및 농작물을 개량, 변형한 발명에 대해 주어진 특허권이라 할 지라도, 농부가 종자를 수확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이를 저장하고 파종하는 행위나 종자를 개량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6. 전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생물학적 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명세서에 해당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국가, 지역, 장소, 채취일시 및 채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발명의 원료가 되는 생물학적 물질, 즉 생명체나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체의 일부는 이 물질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보존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만을 보호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 및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해 온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가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식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며, 다만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체계를 배제하고 어느 한쪽만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가운데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해서 재산권 및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 당사자간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7.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8. 강제 실시권의 확대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야한다. 강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특허된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된 발명이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만 되는 경우를 해당 국가에서 실시된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파리조약과 국내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시급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발명을 강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다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 특허심사

특허 심사시에 특허권의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해당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일년에 400건 이상을 심사하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모든 이에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2. 기술 이전

식량,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은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3세계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전 또는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건강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무상으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각국에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회원

* 본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소수의견 또는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것입니다.

I.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

1. 정보 독점의 문제는 현실 사회의 (계급) 모순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언문에서는 정보 독점 반대 운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공유 운동이 이론 영역이나 실천 영역에서 아직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쉽게 주체를 명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혹은 주체의 논의가 무의미한 운동일 수도 있겠죠).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그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선언문 총론에서 잘못 이해한다면 IPLeft 모임의 활동 궁극적 목적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 시스템 구축'으로 오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정보공유운동은 대중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이며 산발적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하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현실은 미국을 선두로 한 정보 선진국(제국)이 강제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제 3세계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경 속에서 정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IPLeft 모임의 한 회원으로써 "이 선언문은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총론의 마지막 단락에 주목해 주길 바라며,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현실적 힘을 갖는 새로운 버전의 선언문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II. 각론에 대한 내용

1. [8. 신지적새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개인의 성명(publicity right),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소리·냄새상표 등도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III.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

1. [창작자에 대한 보상] 창작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적재산권을 폐기하자는 주장자 중에서도 보상이 창작의욕의 고취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창작물이 사회적 산물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에서 즉 공적기관(정부)에서 적절한 금액을 창작자(인접권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적기관이 보상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 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누구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되 그 실시 이용료를 공적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창작물의 수용의 주체는 공적기관이 되는 것이다.
2. [원창작자의 인격권] 창작물에 대한 실제의 원창작자의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양도될 수 없다. 원창작자에는 단체(기업)에 고용, 감독되거나 위탁 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생산된 창작물이 복제, 배포 등이 될 경우에도 원창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무 저작 및 발명] 기업 또는 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 또는 특허된 발명에 대해 생산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현 지적재산권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고용계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소멸할 경우 직무 저작 및 발명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분에 대해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IPLeft 선언문 토론회

일시 : 2001년 1월 9일

장소 : 숙명여대 교수회관

패널: 홍성태(문화과학 편집위원), 박성호(변호사, 지재권전문),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김형렬(지적재산권법연구회 공동지기)

1. 김형렬 발제 요약

- 지적재산권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한계, 그리고 대안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선언문 기저에는 이견.
- 지적재산권의 존재이유는 독점이 아닌 공익이다.
- 선언문의 문제의식, 지적은 편향적이며 이렇게는 현실적 대안이 어렵다.
- 지식의 공공성이 강조된 대안적 사회에서는 배타적 지적재산은 사라지는가?
- 지적재산권이 사라지면 배타적 지적재산이 사라지는가?
- 지적재산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적 비용(이익)에 대한 연구가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시되면 좋겠다.
- copyright, left 와 같이 흑백논리로 분리하지 말자.
- 각론에 대해선 확실히 타협안이라는 것을 느낀다. 현실적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다.(trips협정을 폐지하자는 등)
- 부분적으론 나 역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보존기간은 너무 길다.
-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박성호 발제 요약

- 발제문 참조.

3. 백욱인 발제 요약

- 선언문 형식에 문제가 있다.
- '선언' 과 '정책제시'가 혼재되어 있다. 차라리 각론은 필요 없었다.
- '선언'이라면 주체, 대상, 유연성, 운동관계 등을 담아야 했다.
- '선언'의 배경이 없다. 기본관점 3이 무게를 더 가져야 한다.
- 그래서 그 어떤 기본권이 지재권보다 상위여야 한다를 선언의 골격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권리의 선언(?)'

- 각론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각기 운동의 한 영역들이며 이는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대안/정책 제시가 되야 하며 다른 공간에 있어야 한다.
- 선언문에서는 테제식의 '근거'가 선언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 '선언문의 위상과 형식'
- '데이타베이스'가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은 전향적인 사고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에서는 중심적인 창작물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재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4. 홍성태 발제 요약

- 선언문과 각론이 혼합되어 있는 형식의 문제
- 절충이 아닌 혼동이다. 이는 ipleft의 실천적 혼란이다.
-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에 대한 의미, 내용
- 독점의 문제, 생명윤리의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 선언문은 ipleft의 운동목적, 실천적 단계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 최소강령, 이행강령, 최대강령 처럼.
- 아직은 1.0이기에는 부족하다.

5. 자유토론 요약

(홍성태)
- 기술의 자본주의적 전유
- 정보재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재에서 사적소유제를 문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다. 정보재/물질재의 차이가 있지만 잠언의 필요는 있다.
- 정보공유운동은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을 저지하는 고리이다.
- 스톨만적 근본주의 운동은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분야와 생명특허분야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제는 일관된 운동전략이 필요하다.

(참석자)
- ms의 분할명령 역시 법으로 생해졌다. 하지만 이는 지식의 상품화를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선언문이 아닌 카피레프트정신에 입각한 사회운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박성호)
- 카피레프트 에대한 망확한 개념필요하다. 카피레프트 운동은 일종의 '유산안물리기 운동'과 같은 기득권 포기 운동이다.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무분불히 사용되고 있다. 이래서는 현실실천운동으로 어렵다.

(주철민)
- (박성호 변호사에게)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는 지적에 대해, 실제 법의 근거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 법이 해석되고 형성되어 간다.

(박성호)
-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실천가능한 폭이 많다. 우리는 힘에도 밀리지만 '이론적 힘'에도 밀린다.

(김인수)
- 지적하신 내용들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변명해 본다.

(남희섭)

- 총론과 각론에 대한 형식의 문제지적은 또 한편으론 우리의 대응역량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백욱인)
- 헌법 22조 2항이 지재권을 강화하는 헌법적 근거인데, 지적재산의 공유적 측면을 강조하는 근거로 해설될 수도 있지 않느냐?

(박성호)
- 지재권을 따로 조항을 두는 나라는 몇 나라 없다. 대부분 '재산권'에서 포괄한다.
지금의 지재권 문제의 핵심은 창작물과는 거리가 있는 '법인'이다. '법인'이 매개되는 지재권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호 변호사 발제문]

'IPLeft 선언문'에 대한 관견(管見)

변호사 박성호

I. "총론"에 대하여

우선 "선언문" 체제와 관련해서 말하고자 한다. 현행 지적재산권 시스템 자체의 근본을 문제 삼는 것과, 기왕의 시스템을 전제로 하되 권리보호의 외연(外延)이 확대되는 것을 문제 삼거나 그 규정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본 관점"에서부터 이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각론"의 주장 내용도 이에 따라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본다.

다음 "총론"의 내용인데, 만일 "선언문"이 현행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지적재산권 시스템과 회통 가능하고 접점이 모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회통'이나 '접점 모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항용 목격하게 되는 상호간에 귀 막고 목청만 높이는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를 시종 유의하여야 한다.

"총론"에서 "첫째, 무임승차의 문제"에 대한 주장은 '문제에 문제로 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둘째, 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별한 예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외국에서 연구, 논의된 것을 더 검토, 연구해보도록 권하고 싶다. 더욱이 지적재산권의 역사가 독점금지법의 역사의 이면(裏面)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검토, 조사해 보면 보다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기술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는 "선언문"을 읽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토론문의 요지는 '근본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나 절충의 혜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거에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1] 기본권의 확장논리는 어느 정도 다른 논리들—가령,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제23조와는 별도의 규정이다. 그런데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창작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은 모두 창작성을 권리부여의 전제로 하는 이른바 창작법(創作法)의 유형에 속한다. 요컨대

가부장적 특권과 전자본주의적 시민문화의 논리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작동되어 온 것인데, 현재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면은 기본권간의 충돌 문제로 결과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II. "기본 관점"에 대하여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이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선인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창작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지적은 타당하다. 지적재산권의 창작에 전제된 공동체의 기여를 감안하여, 공익이란 관점에서 모든 나라의 지적재산권 법제가 그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이 자자손손 영구히 보호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요컨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은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나면 공유(public domain)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적재산권이 처음부터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각론" "17.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언급과도 상호 논리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보호기간의 단축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 중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언급되어 있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즉,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이용과 구별되는 점에 착안하는 것이다.[2] 아나로그 환경에서 책이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구입한 이용자는 책을 무제한적으로 찾아보거나, 또는 녹음물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에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였다. 이와 반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그 가격은 이용자가 그 저작물을 향유하고자 원하는 시간에 상응해서 정해질 수 있다. 예컨대, 영화를 세 번 볼 수 있는 5달러짜리 DiVX 비디오디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25달러짜리 DVD 비디오디스크보다 이용자에게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3]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1) 우선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 정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필수적' 내지 '보편적' 그리고 '공공(성)'이란 용어가 수사적 표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2)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란 용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보접근권"이란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망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즉 정보를

창작성은 권리부여의 헌법적 전제인 것이다. 따라서 창작성 없는 정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가령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는 창작성 없는 정보의 수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을 한다면 결국 만인의 공유 재산(public domain)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의 사적독점의 영역에 놓이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위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Nachbarrecht)의 일종으로 관념화하여 저작권의 관리·감독 아래에 놓이게끔 하는 것이나, 권리가 아닌 '법적 지위'로 개념화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식으로 보호를 꾀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헌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도출된 입법적 해결방안인 것이다. 결코 공연한 법 이론적 흥미에 따라 창발된 '걸치레'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朴成浩,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대한변협신문」, 2001. 1. 1.자).

2) Jessica Litman, Reforming Information Law in Copyright's Image, 22 U. DAYTON L. REV. 587, 601(1997).

3) Joel Brinkley, New Recorded Film Format Draws Criticism from Rivals, N.Y. TIMES, Oct. 12, 1998, at C5. 각주(2), (3)은 Jane C. Ginsburg, Copyright Legislation for the "Digital Millennium", COLUMBIA-VIA JOURNAL OF LAW & ARTS, VOL. 23, NO. 2, 1999에서 재인용.

송수신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물적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농촌 오지 등의 정보통신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정보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고 하는데, 이는 본래의 의미에서 말하는 "정보격차"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옮기면서 단지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라는 표현만을 삽입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적재산권의 '통상적인' 보호가 아닌 그것의 '과도한' 보호로 말미암아 계급과 계층간에 어떤 정보격차가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여기서 사용하는 "정보접근권"이란 용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의 행위를 포섭하는 것인지, 가령 복제, 배포나 전송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헌법상 어떤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는 것인지 언급되어야 한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1)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의 기본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내지 인권인 것인데, 결국 기본권간의 충돌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프라이버시권에 기해 보호를 받는 정보도 있다. 그래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같은 정보인데도 프라이버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지재권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다 우위에 서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프라이버시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연원으로 하고, 지재권의 인격적 보호 또한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자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지적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1) 소유권과는 달리 지재권은 사실 태생부터 소위 '보편적' 원리로서의 측면이 강한 권리로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를 주장하고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왜 우리 사회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져야 하고 무슨 근거로 "특수 운영원리"인 것인지 일응의 제시는 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한국과 같은 유교권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재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식유통구조였다는 점에 천착하여 지식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론(立論)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III. 각론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공적정보"가 "기본관점" "2."의 "공적정보"와 동일한 것이라면 타인이 지적재산권을 갖는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기본관점" "2."에서 말하는 "공공정보"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등은 무슨 근거로 정보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가령 자본 지원이라면 몇 퍼센트 이상 지원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은 "각론"에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대하여

"공공정보" 외에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지재권을 이유로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용어 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래부터 법령,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등, 나아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학술, 의료, 교육, 법률 정보"란 원래부터 보호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것, 즉 기왕에 보호되던 것 중에서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결국 보호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기본관점" "2"에서의 "생활에 필수적인"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거론되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하여

우선 우리 법에서는 "공정이용"이나 "공정사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 법은 저작권 제한을 열거하는 대륙법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은 이를 포괄하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령 "저작권 제한 사유(또는 범위)"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뿐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자유로운 "검색, 복사(또는 복제)"를 허용하라는 것인데, 가령 도서를 기준으로 할 때 도서 1권의 분량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일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도서관에서의 이용시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박탈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문제가 되고 만다.

5.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기본관점" "3"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지재권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산물이다. 정보의 내용이 지재권이냐 프라이버시냐에 따라서, 더구나 프라이버시의 영리적 측면을 강조한 퍼블리시티권이란 것도 "선언문"에 첨부된 "소수의견" "II. 1."에서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서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6.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DeCSS 사건에 관한 언급도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는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서 2호에서는 동법 제12조에 열거한 교육 목적, 사적 복제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DeCSS 사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이를 "선언문"에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법의 용어이다.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

한편 "냅스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상이 다소 복잡하다. 방송의 등장은 가수, 세션맨과 같은 음악산업 종사자들에게 ILO가 말한 '기계적 실업'을 야기한 것에 그쳤지만, 인터넷의 등장은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사기'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4] 가수, 세션맨이란 직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도

4) 이것은 Mike Godwin의 표현으로서, 홍성태,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0, 171쪽의 각주(10)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만 홍성태 박사는 토론자와는 다른 맥락에서 Godwin의 표현을 원용하고 있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시도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5] 그런데 이미 10년 이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을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을 철폐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선택의 문제이므로 이 정도의 언급으로도 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순환 논증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저작물을 예술저작물(works of art), 사실저작물(works of fact), 기능저작물(works of function)로 분류하는 것은 저작물의 본질적 고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기술평가국(OTA)이 편의상 3분류를 시도한 이래 정착된 용례이다. 따라서 이는 창작성의 인정 강도를 이러한 3분류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저작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

10.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기능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론" "9."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한편 "각론" "10."의 주장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단축 쪽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본다.

11.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이것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모델특허'라 부르고 있는 'Business Method Patent', 즉 비즈니스 방법특허에 관한 것이다.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明文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Kohler의 정의를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6] 이러한 특허법 규정 자체에 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입법론적 검토를 병행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BM특허가 컴퓨터 관련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결국 컴퓨터 관련 발명 전반과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즉, '확대론'이든 '제한론'이든 상관없이) 법이론적 내지 입법론적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7] 가령,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발명의 정의에 포함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검토하고, 독일 특허법(제1조 제2항)처럼 "자연법칙의 이용성"은 발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명의 정의가 우리나라처럼 소극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례,[8] 미국 특허법(제100조)처럼 상당히 광범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 등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5) 본 토론문 각주(1) 참조.

6) Kohler, Lehrbuch des Patentrechts, 1908, S.13.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 上」(第2版 增補版), 弘文堂, 2000, 96쪽 (주3)에서 재인용.

7) 우리 특허법과 동일한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이에 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는,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 「先端技術分野における特許保護」(第23号), 有斐閣, 2000. 참조. 이 年報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板倉集一), "근대기술 보호법제로서의 특허권과 私權으로서의 특허권"(辰巳直彦), "특허법 보호대상으로서의 컴퓨터소프트웨어"(山神清和), "금융과 특허"(相澤英孝), "創藥산업의 활성화와 지적재산권"(清水初志) 등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를 선행한 다음 BM특허 지상주의자들을 압박해 가는 것이 요망되므로 주장 내용에도 이에 관한 최소한의 언급은 있어야 한다.

12. "인터넷도메인 분쟁과 상표권 등 표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구체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표현보다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상표권의 전통적인 '혼동가능성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상표의 유일성 내지 개성적 가치를 강조하는 '희석화 이론'의 상표법에의 도입을 철폐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희석화 방지 규정'이 상표법에 규정되면 인터넷도메인 분쟁은 상표권의 효력범위 안에 확고하게 편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이에 대해서는 반다나 시바도 말하고 있듯이 "인간이 과연 생명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규범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에는 ①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③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이 특허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가되었고, 식물변종에 대해서는 특허나 특별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협상 참가국들이 위 협정 시행 4년 후 협정 제27조 제3항(b), 즉 위 ②, ③에 대하여 재검토한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즉, TRIPs 협정의 불특허대상 중 전술한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이란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이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동식물 그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유전공학기술에 의해 동식물의 신품종을 만들었더라도 동식물 그 자체는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모든 개도국이 동 협정 제27조 제3항(b)을 포함한 동 협정상의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2000년 이후에 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려는 입장이고, 개도국들은 TRIPs 협정의 개정논의를 본격화하여 위 규정의 완전한 재검토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위 규정의 이행의무 시한을 연기하려는 입장인 것이므로,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6. "전통적 지식 보호 등"에 대하여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생명자원의 사적 독점화 현상에 대하여 제시되는 대안의 하나가 바로 인도 농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집단적 지적재산권(collec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운동이다. 지역 공동체의 허가 없이 토착 지식체계나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은 '지적인 생물해적질(intellectual biopiracy)'을 하는 것이며, 님(neem)나무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다나 시바도 주장하였듯이 육종자(育種者)로서 농민들에게 인정되는 권리(farmers' right)로부터 '집단적 지적재산권'의 논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비록 법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검토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에 대하여

이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일종의 입법청원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이므로 가장 상세하게 주장되어야 할 내용이다. 즉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소략하게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

8) 독일 특허법 제1조 제2항은 발명이 아닌 것으로서 ①발견 및 학문상의 이론, 수학상의 방법, ②미술적 창작물, ③지적활동, 遊技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계획, 규정 및 방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장
디지털 저작권

활동개요 / 30
성명서 :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31
성명서 :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 32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의 지형과 이데올로기 · 오병일 / 33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남희섭 / 37
디지털시대,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 오병일 / 39
[참고자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이동연 / 42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 49
- 전문가 토론 / 51
- 자유토론 / 80

활동개요

1996년 12월 WIPO에서 WCT 채택, 1998년 12월 미국 의회에서 DMCA 통과, 2000년 1월 한국 저작권법 개정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의 흐름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들 법 제정 및 개정은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지나친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을 미비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저작권법이 상정하였던 저작물, 창작자와 이용자간 권리균형을 통한 문화향상 발전이라는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 있다. 그 실례로써 미국에서 2001년 2월 DMCA를 근거로 한 냅스터의 저작권법 위헌 판결과, 국내에서 2001년 1월 음반산업협회에 의한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혐의 고소, 같은 해 8월 검찰에 의한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기소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에 IPLeft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연대하여 2001년 2월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2001년 8월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성명서를 통하여 냅스터에 대한 위헌 판결이 소수 거대 음반기업의 이해가 관철된 것이며, 소리바다에 대한 고소 역시 이용자들간의 자유로운 정보소통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과 연대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저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다짐은 2001년 4월 6일에서 4월 20일까지 두 주간에 걸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웹사이트에서 개최된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로 이어졌다.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작권 전문가들과 저작물 이용자들이 함께 진행하였던 본 토론회에서는 30여건의 전문가 토론문과 그보다 훨씬 많은 130여건의 이용자 토론문이 게시되었으며, 각 토론문이 조회된 횟수를 통하여 본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행 저작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법 제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임무라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이 토론은 공식적으로는 4월 20일을 끝으로 마감된 것이지만, 이용자토론 공간을 통하여 2002년 1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소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질 것이다. 또한 IPLeft는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가 음악저작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산하고 이용하는 전체 문화콘텐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2001년 10월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라는 주제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의미, 문제점,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법의 악용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문제제기, 아울러 그러한 문제제기를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개최 등은 모두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창작은 그것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에서의 소외계층이 형성·확대되지 않도록 저작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 또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보독점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성명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분노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창작했거나 저작권이 없는 다양한 저작물들 역시 공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회사들의 주장처럼 냅스터나 소리바다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용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주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겠다는 그들의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우리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대한 위협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장비와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며, 그 내용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저작권을 무기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 위반 판결은 인터넷을 단지 '시장'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는 소수 거대 음반기업의 이해가 관철된 것이며, 이를 미국 법원이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 음반기업의 이익이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냅스터 판결에 항의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인터넷에 대한 통제에 저항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음반산업협회도 소리바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아니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1년 2월 20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부산정보연대 PIN /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 정보통신연대 INP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학생행동연대 I'm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의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만일 이용자들의 개인적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과정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서 2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소리바다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음악 애호가들의 전체 풀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음반사에 대한 비판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단지 음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음반구매기계'들이 아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한 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그 명분과 달리,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한다.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은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크게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이익, 특히 소수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될 지식,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척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은 당장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2001년 8월 14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기고글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의 지형과 이데올로기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회원)

지난 8월 12일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올해 1월 음반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를 고소한 후, 수 개의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사용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된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머무르다 이번 기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이 불붙은 듯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아직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어쩌면 벌써 합의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섣부른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현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이 빚고 있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대안에 대한 토론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지지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양자 모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관점과 수위의 문제가 혼재되어 논의되고, 상이한 관점에 따른 상이한 현실 인식 역시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논쟁의 지형들과 저변에 깔린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기술적, 산업적 관점

소리바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배경에는 MP3 플레이어 산업에 대한 눈치보기가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소리바다를 통한 MP3 유통의 활성화는 각 가정에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설치를 확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따라서 회선 사업자들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작권을 근거로 소리바다를 제재하는 것은 발전하고 있는 P2P 기술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복사기, VTR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마다, 저작권자들은 문화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 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P2P 기술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불법적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저작권을 근거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저작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필요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며, 모든 기술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는 기술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기술과 저작권에 대한 가치판단 문제로 돌아간다. 즉, 저작권을 근거로 P2P 방식의 파일교환 기술(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P2P 기술 자체를 막으려함은 아니나, 적어도 소리바다를 비롯하여, P2P 방식의 비슷한 파일교환 기술을 막으려함은 분명하다)을 무력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기술 자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저작권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 관점에서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적절한 타협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컨대, 복사기나 VTR 등도 일방적으로 기술이 수용된 것은 아니다. 복제기기에 일정 요율의 저작권료를 부과하거나, 가정내에 준하는 장소로 복제를 한정하는 등의 정책적인 타협의 결과이다.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소리바다의 경우도 기술적인 수정을

통한 저작권 보호 및 '서비스 유료화'를 통한 저작권료 지급 등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냅스터나 소리바다가 폐쇄되거나 타협을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 MP3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중앙서버의 이용을 배제한 누텔라(Gnutella)같은 프로그램이 실용적인 수준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예측?)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별 근거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어느 시대든 100% 완벽한 규제는 불가능하겠지만, 한 사회의 공권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이 동원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제어하는 것은 기술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법리적 논쟁

소리바다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소리바다와 관련된 판결이 단지 소리바다라는 특정 프로그램의 운명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파일 크기를 갖는 MP3 음악파일이 먼저 쟁점화되었지만, 회선 대역폭의 확대와 압축 기술의 진전으로 조만간 만화, 영화 등 모든 디지털 저작물로 쟁점의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은 결국 디지털 저작물 일반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리적 논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과 소리바다의 책임 부분이다. 만일 이용자가 저작권 위반의 책임이 없다면, 이용자의 파일 교환을 매개한 소리바다 역시 책임이 없을 것이므로, 먼저 이용자의 책임 부분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자. 저작권자들은 당연히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통해 MP3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파일교환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정이용, 혹은 저작재산권의 예외로 취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사 등)를 보호하는 것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 또한, 교육, 비판, 보도, 재판 등 공공의 목적이나 사적 이용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그 이용을 보호한다. (이를 해외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문제는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교환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냐는 것인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법의 실제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에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 비영리적 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게 저작권자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는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이 과연 '개인적'인 복제인가하는 비판을 제기한다. 즉,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공유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배포이며, 개인과 개인의 파일 교환이 뭉쳐서 집단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명 '물방울 효과')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기존의 관념에서의 개인 관계, 혹은 커뮤니티의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물방울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는 결국 사적 복제에 대한 부정이라는 반비판도 가능하다.

이런 논쟁의 맥락에서 실제 피해액의 규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공정이용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음반사측은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리바다 측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설사 음반사들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소리바다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음반사의 영업 능력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는 점 역시 논쟁을 어렵게 만드는 점 중의 하나이지만, 어쩌면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창작자들 다 죽는다'라는 음반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결국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현 저작권

체제의 한계 내에서라면 별 논쟁의 여지가 없어보이며, '설사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하더라도' 라는 전제 속에서 논의가 될 때 저작권법을 뛰어넘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더욱 근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의 개념' 자체가 변화해야하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지적창작물이 책이나 음반같은 유체물에 고착되어 배포되는 경우, 지적창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행위였으며, 복제를 규제하는 것(그래서 Copyright)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불법복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만일 이용자가 저작권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전제로 한 소리바다의 책임문제는 어떠한가? 냅스터의 경우, VTR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VTR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듯, 냅스터 역시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냅스터는 비침해적인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냅스터가 저작권이 미치는 파일에 대한 특정한 침해행위를 인식했고, 냅스터를 통해 그러한 파일이 유통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기여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사이트 자체는 폐쇄되지 않았지만, 저작권이 미치는 파일을 필터링할 것을 명령하였다.

문제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에 얼마나 개입했는가, 그리고 통제의 능력이 있는가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음반사측은 소리바다는 '주로'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종범을 가장한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바다 측은 소리바다는 중앙서버에 음악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냅스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접속해있는 이용자의 위치(IP주소)만 알려줄 뿐, 실제 파일 교환에서 소리바다가 하는 역할은 거의 없고, 이를 통제할 수도 없으므로, 소리바다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리바다가 (현재의 저작권 침해의 비율과 무관하게) 비침해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문제'와도 관련된다. 과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하는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이론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 인지가능성, 통제가능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될수록,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이용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저작권 보호의 명목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번 검찰의 기소를 두고, 직접침해자인 이용자는 가만두고, 기여침해자인 소리바다만을 기소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복제 개념의 변화'라는 문제가 초래한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 철학의 대립 : 공짜족들 <-> 돈에 눈먼자들(?)

대립되는 논쟁의 기저에는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깔려있다.

즉, 음반사 측은 저작권은 생산자의 천부적, 절대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저작권을 부정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MP3 형태든, 어떤 형태든 그들이 생산한 음원은 상품이며, 이를 허락없이 복

제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MP3 파일을 공유하자는 것은 공짜를 좋아하는 얌체들의 뻔뻔스러운 주장일뿐더러, 생산자를 죽이는 '위험한' 주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술창작물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 정책적인 문제라고 본다. 문화, 지식은 근본적으로 인류 공동의 자산이나, 창작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서 '일시적으로'(현재 저작자 사후 50년) 독점권을 부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는 논외로 한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저작권법은 현실과 많은 모순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음반사들은 실제 창작자도 아니며, 음악 유통의 독점을 통해 자신의 이윤만을 챙기려하는 '돈에 눈이 먼' 자들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한다면, 음반사 측의 논리는 문화의 발전은 '문화산업의 발전'이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지구적 경쟁의 시대이며, 지식과 문화는 이미 시작된 미래의 중요 산업 분야이다. 정보화에 앞서나가, 제3세계를 우리의 문화 식민지로 만들자? 이런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거대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재앙-20대 80의 사회-과 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술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과연 저작권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예컨데, 디지털 도서관은 우리나라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공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저작권에 의해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도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하는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발전은 음악 창작자들이 '직접',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현재 소리바다를 통해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풀이 확대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저작권 밖에 없다는 것인가? 또한, 정보, 문화 영역에 있어서 최대의 소비자는 바로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데(예컨데, 책상 생산자가 책상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음악 생산자들은 사실 음악을 가장 많이 듣게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강화가 창작자 보호라는 등식은 단지 특정 순간만을 포착한 단견이며, 궁극적으로 창작자 자신에게 '환경적 제약'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몇 명 잘 나가는 창작자들을 제외하고)

정보공유의 논리(물론 정보공유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은 무척 다양하지만) 는 바로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대안이 무엇이냐는 반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는 차치하기로 한다.) 이미 실제 많은 창작자들이 (종속적이건 그렇지 않건간에) 음반사와의 결합속에서, 음반, 공연 등을 포함한 음악 시장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MP3 음악의 공유는 결국 그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문화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다른 공공적 정책의 실시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창출(예컨데, MP3의 유통을 오히려 확산시킴으로써, 대중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CD 판매나 공연 수입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현재 '뜨는' 가수들만큼의 엄청난 수입은 아닐지라도-는 주장도 있다.)을 기대해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대 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현재는 음악이 문제지만, 만일 디지털 영화 파일이 쟁점이 된다면?

여기서 저작권 중심의 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음반 시장에서의 모순이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그 대안도 저작권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서만은 안될 것이다. 이제 논쟁이 저작권법을 포함한 음반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컨데, 현재 창작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음반사들의 역할은 재고될 필요가 없는가, 저작권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등.

앞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본다.

〔인터넷 대자보 (http://jabo.co.kr)〕

기고글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 (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가단체연합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의 유료화나 사이트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음반사가 저작권을 무기로 정당한 파일 공유 행위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소리바다와 같은 P2P 파일 공유 방식은,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웹 기반에 비해 훨씬 발전된 것이다. 소리바다나 냅스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개인이 직접 만나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다. 서버는 파일을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고 파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위치(IP 주소)를 넘겨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소리바다는 기존의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유사하며, 개인간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와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D로 가지고 있던 음악 데이터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소리바다에 접속한 개인들은 자유롭게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정보의 소통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음악 CD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만든 CD에 갇혀 있는 음악이 소리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의 판매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 손실이 연간 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 그렇게 적혀 있다.

II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움직임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 파일 교환 행위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 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복제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다시 말하면, 복제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기가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소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 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유통이 곧 저작물의 유통이었다. 그러나, 네트 환경에서 저작물은 매체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권자나 음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연권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 환경에서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곧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즉,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2조의 규정(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좀 더 충실한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운동하루소식(2001. 3. 14.)〕

기고글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회원)

1.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그러나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정보공유 운동이 정보독점을 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엄연히 문화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공유운동의 진보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소리바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일부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독점 보호하려는 당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보공유운동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이용하면서 다른 생산 시스템을 지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에서부터, 무정부주의적 정보공유운동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생산물을 '공짜'로 취득하려는 것은 사실상 현 체제가 내재한 무한이윤획득에 대한 욕구와 동전의 양면으로 정보공유'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은 정보의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의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생산물을 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비록 디지털 정보의 제한없는 공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짜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옹호론자들과 '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교환을 옹호하는 것과 정보공유운동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의 네티즌이 MP3 파일에 대한 공짜 취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교환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보공유운동'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현실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봐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고려해야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저작권 체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자체에까지 확장되려고 하고 있지만.)

2. 어떤 '저작권'에 대한 비판인가?

정보공유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추상적인 저작권의 이념'이 아니다. 만일 저작권이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정도였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 쟁점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아마도 그것에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에서 기업, 기업에서 국가, 국가에서 '제국'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요컨대 21세기 뉴라운드 시대 국가 간의 핵심 협상 주제"가 되고 있는, 즉 거대문화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핵심적 기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이다. 우리가 현 저작권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때, 단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과 의식을 강화한다. 즉, 사회변화에

따라 저작권 역시 변화하지만, 또 저작권 역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은 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지만, 법으로 보호하게 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경향은 강화된다. 또한, '이해당사자'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 즉 구조 안에서 이해당사자로 위치지워진다. 예컨데, 만일 취미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free software'에 적극 참여할 사람이라도,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경영진의 위치에 선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를 요구하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대립을 형성하기도 하는 반면, 특정한 지적재산권 법제도가 특정한 이해집단을 형성, 혹은 강화한다.

그런데, '갈등의 조정'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와 '중립적인 중재자'를 전제하며,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만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이해당사자의 갈등 조정'이라는 관점은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사회구조적 맥락을 소거해 버리며, 특정 시점에서의 '타협'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의 조정'은 필요하며, 중요하다.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회는 분열하게 되며, 더 이상 동일한 '사회'라고 규정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재생산을 위해 통합을 추구하며,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회의 권력관계는 균등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라는 개념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단지 평평한 수준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가?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이해당사자'라는 말로 동질화시킨다면, 개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를 복제한 것이 똑같이 '저작권의 침해'로, 즉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석되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사회에서 지식, 정보가 생산되는 특정한 메커니즘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있다.

실제 불평등은 '현실'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구될 수는 있겠으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역차별'을 두는 것처럼, 법적 균등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3.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디지털 환경은 근본적으로 '복제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지적창작물이 책이나 음반같은 유체물에 고착되어 배포되는 경우, 지적창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행위였으며, 복제를 규제하는 것(그래서 Copyright)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불법복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 즉 저작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2) 트라스티드 시스템 (Trusted system)

지금까지의 전제는 인터넷은 '저작권'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은 그렇다.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의 정보 전달만을 규정하는 TCP/IP 프로토콜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컴퓨

터 주소(IP)만을 필요로 할 뿐, '누가' 발신자이며, '어떠한 내용'을 소통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인증' 구조가 그 예이다. 만일 인터넷 위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별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저작권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한번 저작물을 판매한 후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권한을 가졌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트라스티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물의 공공적 이용(공정이용)의 축소가 될 것이다. 기술은 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이용자들의 이용을 통제할 것이며,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었던 공정이용이 설자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통제된 시스템에서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모든 인터넷 이용 행위가 기록에 남게 되고,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토론회 자료집〕

참고자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중앙대 강사)

1.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이제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산업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50년대 중반이래 탈산업사회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던 소위 테크놀러지 기술개발 전쟁은 천연자원과 토지를 점령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를 지배하고 선점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몰고 왔고, 이 과정에서 소위 산업스파이 비즈니스가 기술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위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이제 개인에서 기업, 기업에서 국가, 국가에서 '제국'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요컨대 21세기 뉴라운드 시대 국가간의 핵심 협상 주제가 되었다. 주지한대로 뉴라운드 시대는 우르과이 라운드와는 달리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보기술 제국의 이니셔티브를 확인케해 주는 각종 지적 콘텐츠의 협상 과제들을 제출해 놓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ET(ecology technology) 등 다자간 협상 주제들은 대부분 지식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독점권 행사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듯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자본의 획득과 독점, 그것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지적재산권의 핵심이면서 그 원칙과 방법에 있어 분명한 현장 사례들을 목격할 수 없었던 문화콘텐츠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갈수록 그 수와 양에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순수문화예술계나 문화산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잦은 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최근 대중음악계 내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을 두고 가수들과 음반제작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재수씨의 서재지 노래의 패러디를 놓고 벌인 패러디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논쟁이 대표적이다.

문화콘텐츠의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충돌의 사례들은 개별 문화영역이나 사건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 재산권이 온라인/디지탈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쟁점의 핵심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상 온라인/디지탈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충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저작물에 기반한 현행 저작권법의 기준들을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먼저 주목하지 않고, 곧바로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의 무조건 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수용방식이

오프라인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작물의 사용일반을 저작권위반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후자의 문제는 인터넷의 환경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한 채 이것이 문화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업자와 소비자와의 이권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반된 대립의 핵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소리바다'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올 초부터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의 공유 시스템인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가 뜨거운 논쟁이 되었고, 음악산업협회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소리바다와 비슷한 사례로서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뮤직비디오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방치한 인터넷 음악파일사이트 운영자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1] 소리바다를 비롯해서 인터넷에서의 문화콘텐츠 공유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판결들은 과거의 판결[2]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해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콘텐츠의 수용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 결과이며 나아가 문화산업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이익손실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소리바다의 시스템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검찰의 기소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사이트로 사라져야하는가? 아니 과연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을 인터넷에서 통제할 수 있을까? 소리바다 사이트는 저작권과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공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저작권의 보호와 정보공유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없을까?

2.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소리바다 사건을 둘러싼 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 운영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 사이의 논점과 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

음반산업협회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시장에서 약 2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음반산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앨범을 사지 않고, 인터넷 소리바다에 들어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박지윤의 <성인식> 앨범이 120만장 정도 나가야 정상인데, '소리바다'에서 일반 네티즌들이 공짜로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어보기 때문에 20만장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음반산업협회가 2000억원의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리바다'를 지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추정이며, 그 추정의 객관성이나 사실성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 물론 현재 소리바다에 등록된 회원들의 수가 수백만명에 달해 이들이 만약 음반구매를 모두 거부할 경우 음반산업계의 피해는 막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사용자들 중 실제적 음반 구매 가능자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이고, 거꾸로 음반구매자가 소리바다 사용자와 일치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말하자면, 소리바다

1)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6일 음반 기획·제작사인 ㅇ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전속계약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재, 이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ㅇ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9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경향신문> 2001년 8월 26일자).

2)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지난 99년 무단 도용된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방치해 피해를 봤다며 C사가 J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차적인 도용 책임은이를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에게 있고 대학측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연합뉴스>, 2001년 8월 26일자).

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음반판매의 감소에 일시적이고 미소한 영향을 줄지언정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음반이 많이 팔려 음악산업 시장이 튼튼한 경쟁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음반산업 시장의 위기는 오히려 음악을 소비하는 측의 문제보다는 음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측의 문제가 더 직접적이다. 객관적 통계에 의하면 소리바다가 상용화되는 이전과 이후의 음반판매액[3]을 비교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음반시장의 위기는 오히려 댄스장르를 중심으로 한 엇비슷한 음악장르들의 과다경쟁,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음반의 음악적 가치와 오디오적 역량의 부재, 다양한 음반판매를 가로막는 컴필레이션 음반의 과잉, 유통구조의 불투명성, 방송 중심의 음악활동.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테이프의 범람과 같은 음악 내부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하자면 음반시장의 침체, 혹은 현행유지 상황은 음악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음반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의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다.

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음악의 수용방식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해적으로, 이용자들을 도굴꾼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편화된 온라인 정보사용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파일(mp3)을 공유하는 것은 적어도 길거리에서 불법복제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먼저 알다시피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을 저장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음악파일이 있는 IP 주소만 곳을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 말하자면 거리에서 불법복제 테잎을 제작하여 익명의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옷가게에 들어간 고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역할만 한다. 말하자면 소리바다만 놓고 보면 그곳에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네티즌들의 음악파일의 다운로드는 음악저작물의 소유나 취득의 개념이 아니라 음악적 내용의 공유, 감상의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CD를 구입하여 내가 여러 개의 테잎으로 복사를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 환경의 변화로 간주하기 때문이듯이, 네티즌들의 mp3파일의 공유는 CD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거나 매매교환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더욱이 소리바다에서의 음악적 공유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소리바다와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현행 저작권법에 적용해서 무조건 불법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며, 다만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수용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3)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음반시장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자료출처:음반산업협회, 세계시장은 IFPI)

구분		'95	'96	'97	'98	'99	2000
시장규모	국내시장(억)	3,790	4.045	4,160	3,530	3,800	4,104
	세계시장(억불)	375	377	380	381	385	369
제작사	음반제작사	81	98	118	125	325	567
국내생산	생산물량(천개)	184,086	187,833	236,262	200,800	259,888	283,284
	매출액(억)	1379	1504	1964	1669	1836	2056
수출입	수입(억)	93	94	171	23	42	86
	수출(억)	77	85	94	112	106	103
매체생산	CD(천개)	-	-	-	72,288	122,144	135,982
	테이프(천개)	-	-	-	12,851	13,774	14,730
장르판매 비율(%)	국내가요	-	-	-	71	74	75
	팝뮤직				24	22	20
	클랙식				5	4	5

물론 음악(더 나아가 문화적 콘텐츠)을 수용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의 일시적인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더욱이 mp3 플레이어가 보편화되면 앞으로는 인터넷에서의 mp3 파일을 통한 사용화와 공개적 유료망의 확보도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반산업협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듯이 음악콘텐츠의 복제과정은 오프라인에서의 복제와 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대량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악수용을 단순한 변화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음악정보의 감상이나 제한적인 복제와는 다르게 음악의 유통에 실제 개입가능한 면이 분명 존재하기도 하다. 예컨대 처음에는 대립적이었던 영화-비디오 시장, 출판-복사 시장이 나중에는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듯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수용은 단순히 감상의 차이를 넘어서 새로운 유통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산업계의 강력한 제재 요구가 소리바다와 같은 시장의 수요를 독점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호 IP만을 확인해주는 현행 소리바다와 같은 시스템은 분명 음악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저장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개인이 네트웍으로 확장되는 음악 수용방식의 변화를 야기시켰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3)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이 상황에서 이제 소리바다가 과연 저작권을 위반했는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가령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산업이 망했다고 언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 뮤지션이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전송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현행 저작권법 18조의 2항("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2000. 1.12 본조 신설> 이 조항은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차단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다)을 들어 소리바다의 음악전송 방식이 저작권법이 위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증재했고, 그 과정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18조 조항대로라면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만이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나 혹은 "저작권자가 아닌 어떤 사람도 전송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이 될 터인데, 이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전송권리에 기본 출발은 전송을 통한 이윤의 획득과 보호에 있다. 즉 이윤추구를 전제하지 않은 전송증재를 저작권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또한 이윤추구가 없는 저작물의 전송이라도 저작권자 이외에는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해도 전송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를 모두 제시하거나 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4] 더군다나 이러한 조항이 오프라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에서 음악의 전송이란 개념은 저작권의 요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익명에 대한 무차별/무한반복적인 전송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전송의 권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미 저작권의 일차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의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적 공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기도 하다. 현행 저작권법 2장 6절(22조-35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5] 이중 26조에 해당되는 영리를 목적으

4) 물론 현행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하면 저작물의 복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저작권법 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작권법 6절에 명시된 저작권 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

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 조항과 소리바다의 비이윤적인 사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를 섣부르게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소리바다가 검찰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기소된 데에는 미국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에 저작권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냅스터의 경우와 우리의 <소리바다>의 경우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미 법원이 내린 냅스터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자.

"냅스터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PC 사용자가 음악 저작물을 전송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p2p라고 알려진 파일 공유 프로세스를 통해, 냅스터는 자신의 사용자들이 다른 냅스터 사용자들이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개인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음악 파일을 만들도록 하고,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남희섭, <냅스터 사건 쟁점 정리>,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피이지 자료실).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냅스터가 주장하는 공정사용을 기각하고[6], 원고측에서 주장한 냅스터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7]의 법리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2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냅스터 판결은 냅스터가 설사 형식적으로는 공정사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냅스터 사용자가 상업적 사용에 관계되었고 저작권자의 상업시장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물론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밀레이니엄 저작권법>(DMCA)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소송 단계에서 좀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적어도 냅스터의 판결은 디지털저작권법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이지만, 소리바다의 경우는 저작권법 안에 새로 개정된 18조에 의해서만 적용받았다. 더욱이 냅스터의 사이트 운영시스템은 서버 안에 개별 IP 주소에 수록된 음악파일의 내용들을 명시해놓은 데 비해, 소리바다의 경우는 단지 IP 주소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는 "냅스터는 서버가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적 성향이 짙다"면서 "반면 소리바다는 검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서버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냅스터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최,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발표, <연합뉴스>제공)..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차이는 결국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역할에 있는데, 예컨대 냅스터의 경우 검색의 주체가 냅스터 서버라면, 소리바다에서 주체는 사용자 자체가 된다. 이 차이가 저작권법의 전송권의 침해에서 소리바다가 냅스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을 통해 서로 다른 음악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업적 거래없이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역할을 하는 소리바다가 과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 침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5) 정보공유운동 문제와 현행 저작권의 현실

이번 소리바다 사건을 놓고 정보공유운동을 펼치는 입장들은 음반산업협회가 어떻게 해서든 저작권을 지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고 불이익을 막겠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어 보인다. 정보공유운동은 현행 저작권법을 비판하면서 카피레프트 운동의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고, 더불어 저작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헤게모니, 잘못된 저작권의 독점적 행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예컨대 정보공유운동가들은 소리바다를 고소한 당사자들이 과연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문시하고 있다. 사실 정보공유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의 성격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타협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운동은 지적재산권의 독점을 막고 정보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며, 현행 조작권법의 권리조항에 대한 좀더 많은 해체를 요구하는, 말하자면 일종에 싸워서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정보공유 운동이 정보독점을 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엄연히 문화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공유운동의 진보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소리바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일부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독점 보호하려는 당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정보공유운동의 취지에 벗어나서 인터넷의 이용과정에서 대단히 관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운동단체들이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의 공유와 같은 비중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한 가수의 곡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수나 제작사의 저작권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문제는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태도가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제적 비용없이 음악을 듣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음악적 공유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로 타당한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와 '디지털 저작권보호'라는 두가지 상반된 원칙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서, 한국음반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관행부터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보도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의 행사는 뮤지션들과 제작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뮤지션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속계약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작사가 갖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가수들이나 작곡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작사에서 마음대로 베스트앨범을 내고, 컴필레이션앨범을 낼 수 있고, 저작권료조차 지불받을 수 없다.[8] 현재 모든 저작권에 대한 대행은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하고 있는데, 저작권협회 역시 뮤지션들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저작인접권자(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이 음반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독점 제작사들에 의해 대단히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부터 해결되어

돌의 공연(제26조)/사적 복제(제27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점자에 의한 복제·배포(제39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6) 공정사용의 여부는 (1) 저작물 사용의 성격과 목적(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원창작물의 단순한 치환인가, 상업적 사용인가 비상업적 사용인가), (2) 사용의 성격(The nature of the use), (3) 사용 부분(The portion used), (4)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use on market)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판부는, 호스트 사용자가 익명의 요청자에게 파일을 배포한다면 이것을 개인적인 사용이라 할 수 없고, 냅스터 사용자는 원래 돈을 주고 사야하는 그 무엇을 무료로 얻었기 때문에, 냅스터 사용자들이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관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냅스터 사용자의 음악 파일 공유 행위가 음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결론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냅스터로 인해 대학가의 음반 시장이 감소했다는 원고측 보고서를 인용했으며, 설사 냅스터가 원고의 현재 시장(오디오 CD)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다른 시장(예컨대, 미래 시장인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 시장)을 개발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남희섭, <냅스터 사건 쟁점 정리>).

7) 기여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냅스터는 자신의 사용자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침해를 조장하고 도와주었으며, 물질적으로 그 침해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했다. 대위침해의 직접적인 재정 이익과 통제 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냅스터는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권(police)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남희섭, 위의 글에서 인용).

8) 대표적인 사례가 조성모의 리메이크 앨범에 실린 하덕규의 <가시나무>가 본인의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만들어졌고, 신승훈의 베스트 앨범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 소속사에서 낸 경우이다. 보통 이런 식의 베스트 앨범은 전속가수가 소속사와 결별했을 때 신보가 나오기 얼마 전에 발매해 일종의 보복행위로 사용되곤 한다.

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운동이 정보일반에 대한 운동이긴 하지만, 문화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운동과 저작권 보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충돌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화적 진보의 관점에서 양자의 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요컨대 음악제작자들의 입장에서도 네티즌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적 공유를 직접적인 저작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으며,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터넷에서의 음악적 공유가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음악네티즌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소리바다에서의 음악적 공유가 결과적으로는 음악산업의 발전과도 연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모색

그렇다면 이 양자의 역설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은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2, 제 3의 소리바다와 제 2, 제 3의 통제장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mp3 산업은 이제 태동기 불과하며, 앞으로 수많은 변형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9]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의 완전자유를 주장하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문화콘텐츠 환경의 진일보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 원칙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그치지 말고 디지털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

2)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의 구조상 오프라인 방식대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음악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연계시킬 것인가에 있다.

3) 소리바다의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해서 사이트 자체를 음악포탈 사이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이트의 전환을 통해 정보사용에서의 최소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발표된 지 일정기간 이하의 신곡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유보하고 그 이후 업데이트하는 차별적인 방식을 도입,

5) 네티즌들의 음악적 공유를 기대하여 음반의 구입 등과 같은 상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것.

6) 인터넷에서 개인차원의 음악적 공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

7) 음악을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에 음반산업계가 면밀하게 대응하여 mp3 음악에 대한 수요를 음반시장 안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자작권 문제 토론회 자료집〕

9) 이에 대한 논의로는 이 자료집에 실린 김영식씨의 글(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을 참고하기 바란다.

온라인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일시 : 2001년 4월 6일 ~ 20일 (2주간)
참여 : 홍성태(사회자), 남희섭, 전형성, 우지숙, 이은우, 양정환, 최경주, 송정후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CNET 코리아(http://korea.cnet.com), 뉴스보이(http://newsboy.co.kr)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풍부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자 약력소개

홍성태
문학박사 / 상지대교수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 주로 환경사회학과 정보사회학 분야를 공부하고, 현재는 원주의 상지대 교양과에 재직하고 있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저서에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문화과학사, 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새길, 2000) 등이 있다.

남희섭
변리사
1992년 연세대 전기공학과졸업
1992년 삼성전자
1993~1995년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1995~1997년 윤동열합동특허법률사무소
1997~2000년 리인터내셜널 특허법률사무소
2000~현재 윤동열합동특허법률사무소
'디지털은 자유다'(이후) 공저

전현성
P2P협회 사무국장
United Korea공동창업
Uddum Communication 대표
삼성경제연구소 P2P연구회시삽
사단법인 한국 P2P협회 창립 발기인
사단법인 한국 P2P협회 사무국장

우지숙
언론학박사 / 서울여대 교수
1989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
1995 - 미 University of Pennsylvania 언론학 박사
1997 - 미 New York University 법학 J.D.
미 뉴욕주 변호사
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WIPO, eResolution 도메인네임 분쟁 판련 패널
저서에 Copyright Law and Computer Programs, 논문에 '지식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등

양정환
소리바다 개발자 / 소리바다 운영자
1989년 - 미국으로 이민
1997년 Columbia University 졸업
(Computer Science 전공)
1998년 소리통 mp3 플레이어 개발
1999년 Streaming Audio Player
(현 소리바다에 내장된 플레이어) 개발
2000년 소리바다 개발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98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송정후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 운영자
저는 광주에사는 평범한 고등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평범한 것보다는 튀는 걸 지향하는 뜻에서 Free Muz를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1987~199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1991~1992 미국 Harvard대학교 객원연구원
1992~1995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1995~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1989.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표준저작권법 제정 정부 대표
1990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정부 대표
1995~1996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외교 회의 정부 대표
1997~ WIPO 시청각실연 의정서 전문가위원회 정부 대표
1998~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 정부대표
2000 WIPO 시청각실연의 보호를 위한 외교회의 정부 대표
멀티미디어와 저작권—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그 외 다수

전문가토론

번호 : 1
글쓴날 : 2001-04-06 13:52:05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854
제목: [사회자]토론 시작!

안녕하세요, 홍성탭니다.

식목일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숲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만, 식목일을 식목일답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늘 '한식'으로 보내고 있을 뿐이지요. 어제도 성묘를 다녀오느라 하루종일 차에서 시달렸습니다. 제사도 성묘도 없어지고, 나무를 심고 보러 다니는 식목일이 되기를 꿈꿔 봅니다.

날이 잔뜩 흐렸습니다. 그러나 날씨와 상관없이 토론회는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도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원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병일 팀장이 전화를 해서 가능한 일찍 시작해 달라고 했거든요--;

첫번째 주제는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혹은 인위적 독점'입니다. '인위적 독점'이란 스톨만이 '지적재산권'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독점'이 인터넷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유'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2주간 8개 정도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토론 주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토론자를 지정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기한도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번호 : 2
글쓴날 : 2001-04-08 02:37:22
글쓴이 : 남희섭 조회 : 1021
제목: 인터넷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의 남희섭입니다.

오늘 육순을 맞이하신 저의 어머니께서 최근 컴퓨터를 배우셨다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 안부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생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가족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고 그것을 비디오 캡쳐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작업을 도와드리면서, 디지털 기술이 정보의 소통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토론의 첫음 주제는 '지적재산권이 인터넷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군요. 저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차이점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갈까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물이나 발명과 같은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상표와 같이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표지를 규율하는 법률(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특정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상표권자의 상징적인 정보 즉,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저작물이나 발명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체물과 유체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물의 점유(占有)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유체물의 경우에는 굳이 소유권이라는 법제도가 없더라도, 유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유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협상을 해야 하고, 점유자는 유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대가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달리 말하면, 유체물은 대상물의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유권의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체물은 본질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이 타인의 이용을 불완전

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체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이용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만들어진 배타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설된 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톨만이 지적재산권을 인위적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논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문화의 발전이나 산업의 발달을 위해 지적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정보나 지식과 같은 무체물의 보호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체물이 표현된 유체물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할 때, 저작권자는 소설이 출판된 서적의 판매나 복제를 통제하는 권리를 통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고, 음악은 그것이 표현된 음반의 통제를 통해서 소유권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방식에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나 지식이 '0' 과 '1' 의 조합으로 비트화되고 이러한 비트 정보가 컴퓨터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무한대로 유통될 수 있는 네트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통제방식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이제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복제되는 범위와 내용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금의 저작권 제도는 과거에 복사기나 팩스기, VCR, TV와 같은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송권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제 중심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체계가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보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재산권법이 사이버스페이스에 그대로 적용되고 저작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식이 바뀌지 계속된다면, 그것은 인터넷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이용행위에 주목한다면, 저작권법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가 유통되어야 하는지, 이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유통해야 하는지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 음반협회는 냅스터를 통해 이용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음악 파일과 금지되는 파일 목록을 냅스터에게 제공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냅스터는 금지되는 파일 목록이 유통되는 것을 감시하고 제한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냅스터가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음악 파일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한하지 못해 폐쇄된다면 이용자들은 더 이상 냅스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호 : 3
글쓴날 : 2001-04-08 22:58:06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541
제목: [사회자]두번째 주제

안녕하세요, 사회잡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 토론 메일링 리스트가 아주 조용한 주말이기도 했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남희섭 변리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주말이었습니다. 집회도 참석해야 했고, 여기저기 다닐 곳도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한번 독촉성 메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만... 아무튼 잠시만 시간을 내서 이왕 메일을 확인하시는 김에 바로 답신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두번째 주제를 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만, 첫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새 주제와 옛 주제를 다시 공시합니다.

첫 주제: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터넷의 자유를 구속하는가, 인터넷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둘째 주제: 'P to P와 지적 재산권'. 주최측에서 제시한 주제를 제가 약간 바꿔 보았습니다. 원래 주제는 소리바다나 냅스터 등의 P to P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아니면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가?

화요일 오후까지 이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점과 논거를 명확히 제시해서 불꽃튀는 논쟁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번호 : 4
글쓴날 : 2001-04-10 12:09:59
글쓴이 : 양정환 조회 : 808
제목: P2P와 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 입니다.

P2P와 지적재산권이란 것이 워낙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말을 풀어가기가 그리 수월할 것 같지는 않군요.

우선 개인적으로 전 카피레프트주의자는 아닙니다. 소리바다나 냅스터에 대해 얘기할 때 저작권을 파괴시키는 괴물 정도로 취급을 하는데, 저는 생각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mp3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P2P 서비스를 개발/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는 있지만, 모든 권리자들의 권리와 권익은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왜 그 권리라는 것이 과연 음악 저작권자들이나 저작인접권자들에게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란 원래 미국 대학간의 학술적 교류를 위해 생겨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처음에는 순수 비상업적으로 돌아가던 것이였고,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상업화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의 인터넷은 이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던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mp3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전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학생들이 mp3 파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 취급하려고까지 합니다.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사용자 입장에는 이전부터 누리던 사용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방송파의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 한집에 TV 한두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 한집에 컴퓨터 한 두대와 인터넷 서비스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돈 주고 장비를 장만했더니 그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를 사용하지 말라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사용자들이 쉽게 충분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권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간다면 그들의 권리에 대해 네티즌들도 호응해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용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저희 같은 개발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음악이 창작물이라면 소프트웨어도 물론 창작물입니다. 음악 창작물 보호를 위해 소리바다 같은 것은 만들지도 운영하지도 말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잣대로 어떠한 창작물이 더욱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겠습니까?

저작권이란 원래 창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많은 창작물을 육성하고, 결국은 이를 대중이 즐길 수 있게 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만 보호해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저작물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파악을 하여, 모두의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번호 : 10
글쓴날 : 2001-04-10 18:37:10
글쓴이 : 최경수 조회 : 677
제목: Re: P2P와 지적재산권

이 주제 또한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만큼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의 토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든 지적재산권 제도는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저작권 분야에 국한해 볼 때 위성방송은 기존 저작권 질서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종전에는 국경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위성방송의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숙제가 풀리지 않은 채 인간의 머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P2P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P2P 서비스는 당초 저작권 제도에서 예정했던 사항이 아닙니

다. 개별 저작물 소비자가 저작물 이용(저작권법상 허락 없는 이용은 침해임)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저작권법의 용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제도는 오랜 역사의 소산도 아닙니다. 유럽이 근대화하면서 프랑스혁명 이후 급격하게 '문명' 사회에 번졌습니다. 200여년의 짧은 역사밖에 안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6년에 탄생한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인 베른협약은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현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20세기 초에 체결한 조약 중 아직도 살아 숨쉬는 조약은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으로서 1883년의 파리협약도 마찬가지로 생생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20세기를 전후하여 시작된 기술의 발전, 즉 인쇄, 사진, 사진복사 등 복제기술, 방송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 매체가 변하더라도 (음반만을 보더라도 SP, LP, CD, LD 등으로 변화) 지적재산권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단순한 명제인 것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P2P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시련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엔지니어와 학자간에, 업계와 정부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번호 : 5
글쓴날 : 2001-04-10 14:22:56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389
제목: [사회자] 부탁의 말씀 - 사회자

안녕하세요, 사회잡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남희섭 변리사만이 첫째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제도 이미 제시되었지만,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토론자들의 이름을 주최측에서 임의대로 밝혀 놓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무도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있나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각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시된 남희섭씨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의 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번호 : 6
글쓴날 : 2001-04-10 14:23:58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618
제목: [사회자] 양정환씨의 의견

소리바다의 양정환씨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제게는 이 메일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일씨의 전화 연락을 받고야 알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토론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환씨는 '카피라이트'의 입장에서 인터넷에 저작권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인 것같습니다. 일반 이용자와 컨텐츠 제공자 사이의 갈등에 덧붙여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법을 정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저작권협회나 심의회 쪽에서 한 말씀하실 때가 된 것 같은 데요?

번호 : 11
글쓴날 : 2001-04-10 21:29:01
글쓴이 : 남희섭 조회 : 518
제목: Re: [사회자] 양정환씨의 의견

일반 이용자와 컨텐츠 제공자 사이의 갈등,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문제 -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법률이라는 제도뿐인가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배타적 권리를 법률로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리바다 사건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 : 7
글쓴날 : 2001-04-10 14:28:13
글쓴이 : 임학연 조회 : 710
제목: 소리바다와 저작권

안녕하세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담당 임학연입니다.

사실 저는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에서 주최한 금번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와 관련하여 이 자리가 反저작권을 표방하고 있는 토론회가 아닌가 약간의 오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및 특히 소리바다와 관련한 당 협회의 입장을 전문가와 일반 네티즌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을 2000. 1. 12일에 신설하였으며 전송에 대한 정의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공중송신이라 하여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송신(유선전기통신설비로서 그 한 부분의 설치 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을 하는 것"으로 규정,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송부문은 제외되어 있으나, 1995년 "LaMacchia 및 NET" 법에 의하면 전송권에 전자적 장치에 의한 전송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 권리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활성화등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처리 관계가 불명확한 이때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직시 공청회등을 거쳐 조만간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보호 및 저작물 사용자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집니다.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트레이드마크는 개인간 파일교환(P2P) 기술이라 여겨집니다. 잘아시겠지만 P2P(Peer to Peer)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다운로드 기능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포털이나 중간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 거래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상거래가 가능하며 근거리통신망(LAN)에서 PC끼리 자유로운 파일교환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시각에서는 당 협회에서 국내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조치의 영향으로 동 업체의 사이트가 폐쇄될 것이 아닌가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현재 소리바다측과 수 차례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소리바다측에서도 인터넷상의 음악화일 무료 다운로드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 향후 저작권관련 단체와 동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냅스터의 금번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는 물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이 엄연히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판결이 내려 진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해당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냅스터 판결 후 경과내용

2001. 2. 12 - 13 : ◇ 냅스터 판결에 따른 당 협회의 입장 및 계획 발표(신문사 및 방 송사)

- 해당 인터넷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 할 것이며, 만 약, 업체와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저심위의 조정이나 더 나아가 협회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 할 것을 표명

2001. 2. 16 : ◇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 협회 내방, 1차 협의 진행

- 소리바다측에서는 미국 냅스터 판결이 소리바다에도 동일하게 작용될 것을 인정, 향후 관련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저작권 및 인접권 부문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표명

-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 사이트를 유로 사이트로 전환해야만 가능할 것임을 양측이 공히 인정

2001. 2. 21 : ◇ KOMCA 對 예실연간 업무협의

- 협회의 입장에 찬성하며, 향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해결하자는 입장 표명

2001. 3. 6 : ◇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P2P협회 사무국장과의 2차 협의 진행

- 1차 협의내용 재확인

- 무료사이트에서 유료화로 전환시 약 6개월 소요되며, 현재 계류중인 고소건이 해결되면 곧바로 유료화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함

- 미국 넵스터측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저작권침해 불법 파일교환 차단을 위해 여과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에 소리바다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유로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고 유로화 작업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할 계획

2001. 3. 15 : ◇ 디지털컨텐츠사업연합회 간담회

-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 참석

- 유로화 방안 강구중임을 표명

- 관련 단체와의 저작권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려는 의지 표명

저희 협회에서는 동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유사 인터넷업체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며, 또한 타 저작권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온라인 음악시장을 양성화하고 관련 업체와 저작권 문제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번호 : 8
글쓴날 : 2001-04-10 14:29:39
글쓴이 : 이은우 조회 : 483
제목: 지적재산권은 인터넷을 발전시킬 것인가

1. 지적소유권은 인터넷을 발전시킬 것인가?

(1) 과연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인 정신적, 무형적 창조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산업과 문화의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적소유권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1850년대 자유무역주의자들도 특허권제도를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유무역주의가 풍미했던 네덜란드에서는 1817년 채택한 특허법을 1869년에 폐지하였다가 1910년에 다시 입법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지적소유권법 상,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공저 육법사, 47페이지).

한편 재미있는 것은 현재의 지적소유권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도, 현재의 지적소유권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누구나 자신의 주장의 논거는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많은 인류가 정신적 무형적 창조물을 보다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양측의 주장의 논거가 일치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궤변의 산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전세계 지적소유권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적소유권법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지적소유권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의 경우,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허제도는 지적 창조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특허로 보호되던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소유권 제도가 지적 창조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허법은 공개한 발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발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양 측면은 저작권, 의장권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저는 지적소유권제도는 위와 같은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독점이 과연 적절할 것일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지적소유권의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

한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인류가 최저한도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면서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나친 부의 독점을 막고, 사회의 부존자원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의 경우 지나친 사적 소유를 막기 위해 대다수의 나라들은 우리의 '토지공개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소유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공동의 삶의 터전인 토지와 마찬가지로, 지적인 창작물의 경우에도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소위 지적소유권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것이고, 정보기본권(보편적 역무, 복지정보통신 : 우리나라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지적소유권 제도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현행 지적소유권 제도는 지적소유권자에게 지나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적소유권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현행 지적소유권 제도가 지적소유권의 독점적 권리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입장이 노골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인터넷의 발전과 지적소유권

인터넷의 발전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이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망의 출현입니다.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인류는 원본과 다름없는 복사본을 거의 아무런 추가적인 비용도 들이지 않고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화로 인하여 정보의 전달이 거리의 제한 없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 분배의 양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망의 출현의 인류의 자유의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주류적인 힘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오히려 거대한 자본의 힘이 끊임없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자본의 힘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장되었습니다.

한때 인터넷의 출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정보의 공유와 권력의 분산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인터넷이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실현시켜 주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점을 강화시키고, 정보의 격차를 통하여 빈부의 격차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의 지적소유권 제도에 새로운 반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열어 준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 아니면 최소한 인터넷을 통하여 독점의 강화, 정보의 격차의 확대를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지적소유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3. 두 마리의 토끼

저는 아직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두 개의 길의 가운데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적소유권 제도는 정보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에 제동을 걸기 위해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미국의 판결에 의해 저지된 것은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자유와 자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지적소유권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주제에 대한 저의 의견은 '지적재산권은 인터넷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고, 인터넷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호 : 9
글쓴날 : 2001-04-10 18:31:57
글쓴이 : 최경수 조회 : 369
제목: re: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몇 분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인터넷과의 관계를 논문 한 두 편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나 인터넷 분야나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을진대, 이 두 개를 묶어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필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약소한 소견입니다.

필자는 비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는 법정기구에 소속되어 있고 이 기관은 정부의 공적 기능을 맡아 수행하기도 합니다. 연구실장이라는 자리는 주로 조사연구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곳에 실린 내용은 순전히 필자의 책임이며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다른 곳에 실었던 글로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적 창작물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이며 그 확대재생산을 통해 인류의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 생활은 사람의 정신을 살찌우며 산업 활동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다. 각국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화와 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후원 제도(patronage)를 받아들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업과 목축에 전념했던 시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산업의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후원 제도가 문화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후원 제도에 힘입어 각종 학문과 예술이 꽃을 피웠다. 17세기 이후 과학혁명과 그에 이은 산업혁명은 후원 제도에 의존한 바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란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선망을 존중하고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창작 활동에 몰두하여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오늘날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그대로 부합한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우위를 차지하듯이 더욱 실용적이고 효용이 높은 창작물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 가치가 높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은 더욱 창작 활동에 매진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수한 인력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이다. 후원 제도가 일방적으로 후원자의 시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제도라면, 지적재산권 제도는 법과 제도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조화한 제도로서 근대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에 어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지적재산권의 목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히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정도로 이해하였다. 1980년대 들어 산업이 고도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우리 나라가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 체제에 참여하면서 저작권을 보는 시각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널리 보급되면서 저작권은 산업, 특히 문화산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체득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체가 바뀐다고 지적재산권 사상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학문, 산업의 발전을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탁한 이상 양자간의 조화가 절실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12
글쓴날 : 2001-04-11 00:15:07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270
제목: [사회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오늘 하루 여러 토론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들 한마디씩 해 주신 것 같군요. 의견들을 보건대 대체로 토론자들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좀더 깊은 토론을 위해 제 '관람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터넷과 저작권, 소리바다와 저작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가지 정도의 입장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1) 카피레프트의 입장. 이 입장은 특히 남희섭씨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남 변리사의 입장은 '정통' 카피레프트와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카피레프트는 사실 기술개발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인 데, 남 변리사는 기술이용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 카피라이트이지만 인터넷은 유보 혹은 예외적으로 적용. 이 입장은 남 변리사의 입장과도 상당 부분 통할 수 있을 것 같군요. 3) 카피라이트이며 인터넷도 동일하게 적용. 이 입장은 1)과는 물론이고 2)와도 상충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토론자의 의견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논점을 분명히 정리해서 서로들 제시해 주시면, 전체 토론이 훨씬 더 흥미롭고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 : 13
글쓴날 : 2001-04-11 13:15:52
글쓴이 : 이은우 조회 : 606
제목: 냅스터 소송의 경위와 냅스터 판결에 대한 오해들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미국에서의 냅스터와 관련한 소송의 경위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먼저 간략하게나마 냅스터 소송의 경위와 미국 연방항소심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밝히고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냅스터 소송의 경위

가. 냅스터 사건의 일지

1999. 1. 숀 패닝 냅스터 개발
1999. 5. 냅스터사(이하에서는 냅스터라고만 하겠습니다) 창업, 서비스 개시
1999. 12.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이하에서는 RIAA라고만 하겠습니다)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사이트 폐쇄청구
2000. 7. 26. 연방지방법원의 냅스터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중지 결정
2000. 7. 28. 연방항소법원 중지결정 유예
2000. 8. 12. 연방지방법원 냅스터사이트 폐쇄결정
2001. 2. 12. 연방항소법원 RIAA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중지결정

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냅스터에 대한 청구

(1) 냅스터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중앙 컴퓨터 서버의 허브를 포함한 총체적인 기반설비와 장비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수백만의 음반의 링크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음반을 급속하고 효과적으로 인식, 복사, 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악파일의 등록과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사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배포되고 수없이 복사될 수 있는 녹음물들의 도서관을 만들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량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그리고 냅스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냅스터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을 구축하고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냅스터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3) 결국 냅스터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대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civil code section 980(a)(2)를 위반하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냅스터의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한다.

다. 냅스터 측의 주장

(1) 소비자들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 음악을 만들고 교환하는 것은 오디오 홈 녹음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다.

(2) 소니사에서 제조한 비디오 플레이어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은 소니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비디오 플레이어가 적법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설사 이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용도로(즉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소니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냅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냅스터의 디렉토리 서비스는 다양한 실질적인 비침해적인 사용법이 있다. 이용자들이 냅스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말도록 냅스터는 고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이용자들이 냅스터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냅스터 서비스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실제로 냅스터의 사용자들은 냅스터를 공정한 사용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한 RIAA의 반박

(1) 오디오 홈 녹음법은 복제방지장치가 장착되고 로열티를 지불한 장치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판결에서도 mp3 파일의 하드디스크에의 저장은 디지털 녹음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홈 오디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한 것이다.

(2) 냅스터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수 십만의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적이용이 아니라 공중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즉, 냅스터 이용자들의 복제는 공정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선다.

(3) 소니의 비디오 플레이어는 가정에서 주로 테이프에 녹화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가정내에서 녹화해서 보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냅스터는 한번 판매하면 계약관계가 끝나는 비디오 플레이어와 달리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냅스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지장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냅스터의 비침해적 용도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도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기능에 불과하다. 주요한 중심적인 용도는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다. 소니의 경우는 중심적인 기능은 비침해적 용도이다.

마.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의 서비스중지결정(2000. 7. 26)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RIAA 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일종의 잠정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 회사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매릴린 패톨 판사는 원고인 미극음반협회의 승소가능성이 크다면서, 냅스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연말께 7천만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연방항소법원의 서비스중지결정의 유예결정(2000. 7. 28)

위의 결정에 대한 냅스터의 항소에 대해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냅스터의 서비스 정지 시한을 9시간 앞둔 28일 냅스터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9월 초 소송 당사자들간의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냅스터에 대한 서비스 정지 결정을 유예하였다.

사.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의 사이트 폐쇄판결(2000. 8. 12)

2000. 8. 12. 드디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냅스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익명의 사용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냅스터를 통해 MP3 음악 파일을 다운받거나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냅스터 사용자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무료로 얻는다는 점에서 냅스터 사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냅스터는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은 음악들은 모두 무료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풍조는 상업용 다운로드 시장(비용을 지불하고 파일을 판매하는 사업) 구축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3) 따라서 냅스터의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폐쇄하여야 한다.

아. 연방항소법원의 일부 서비스 중지결정(2001. 2. 12)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냅스터 측의 항소로 시작된 연방항소법원의 냅스터 소송의 2심 판결이 2001. 2. 12. 내려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게 해 준 것은 불법이므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

(2) 냅스터 사이트의 전면 폐쇄를 명령한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재심하라.

(3) RIAA는 특정파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여 냅스터에 해당파일의 서비스제공의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냅스터는 해당 파일의 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냅스터 판결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냅스터 판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냅스터에 대해 내려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냅스터에 내려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것이라던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냅스터 사이트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냅스터 사이트는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냅스터의 서비스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 저작권자가 특정파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여 (2) 냅스터에 해당파일의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그럴 경우 냅스터는 해당파일의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특정파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이름이 yesterday.mp3 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지. 파일의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므로 파일의 이름이 yesterday.mp3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yesterday라는 노래의 파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냅스터 사이트에서 yesterday.mp3 파일의 공유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책의 제목이나 노래의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각국의 저작권법의 입장이거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yesterday의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파일에 yesterday.mp3 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 파일의 공유를 막을 근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2) 냅스터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의 냅스터의 파일공유 서비스가 위법했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장차 저작권자가 냅스터에 특정파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여 냅스터에 해당 파일의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해당파일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냅스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해당 파일의 서비스 중단의 요구를 해올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작권자들로부터 구체적

인 저작권 침해의 증거의 제시를 받아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냅스터의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은 냅스터의 과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힌 것은 만약에 장래에도 저작권자가 위와 같이 저작권의 입증을 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할 경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3) 냅스터 판결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리바다가 저작권자들로부터 해당 파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해당파일의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었는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받지 못했는데도 소리바다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서비스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번호 : 14
글쓴날 : 2001-04-11 22:36:39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529
제목: [사회자] 다시 한번 정리

남회섭 변리사와 이은우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든 생각입니다. 두 분의 견해는 최경수 위원의 견해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보이는군요. 최경수 위원은 심지어 베른협약과 파리협약의 유효성까지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협약은 그 '한계' 때문에 그 동안 줄기차게 '개정'되어 왔고, 마침내 WTO/TRIPs와 WIPO 신저작권조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권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인 논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더욱 더 큰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측에서도, 예컨대 황의철 검사처럼, 기존 저작권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요컨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 바탕을 둔 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수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에 남회섭 변리사와 이은우 변호사의 견해에 대한 논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리바다측에도 묻고 싶습니다. '컨텐츠의 공유'에 찬성하나요? 기술을 이용할 '자유'에 찬성하나요? 기술을 개발할 '자유'에 찬성하나요? 마지막 질문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반대를 염두에 두고 드린 것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소리바다 사이트를 보니 하단에 '카피라이트'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복제권'인지요? 그것과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른 분들도 소리바다측에 대한 저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까지 말씀 안하신 분의 말씀을 더욱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 19
글쓴날 : 2001-04-14 17:35:31
글쓴이 : 양정환 조회 : 367
제목: Re: [사회자] 다시 한번 정리

우선 소리바다 사이트에 있는 copyright이란 의미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가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측은 아닙니다. 단지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들의 독점적인 권리만을 옹호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작권자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여 대중에게 피해가 가게 한다거나, 기술적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을 보호하려면, 스스로 그러한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폐에도 복사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폐를 복사한다거나 해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법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사가 힘들게 보호장치를 사용합니다.

사회자님의 질문에서 말한 "자유"란 것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에는 물론 찬성합니다. 소프트웨어 특

허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저작물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많은 소프트웨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발자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실제로 작업을 한 소스가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그 개발자의 기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 소리바다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를 제재할 수 없을 것이고, 누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자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술을 이용할 '자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이 또한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불법적인 기술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바이러스 라든지..) 당연히 이용할 자유가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특정 기술의 이용을 막을 수 없다면 (예를 들어 gnutella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미 자유로운 기술의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굳이 이용할 자유에 대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번호 : 15
글쓴날 : 2001-04-12 10:49:37
글쓴이 : 이은우 조회 : 641
제목: P2P와 저작권

1. p2p는 인터넷의 새로운 방식

p2p는 지금까지의 검색엔진이나, 대형 서버를 통한 인터넷의 접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접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수히 많은 개인과 개인의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질 정보의 세계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의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p2p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소비자 피해, 컴퓨터 범죄 등의 문제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p2p는 정보의 생산, 전달, 소비에서 분명 새로운 세계를 열 것입니다.

2. P2P와 저작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p2p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물론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복제 및 배포의 개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지 스트리밍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전송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범위 또는 가정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방법.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 중 어느 범위까지가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범위 내지는 가정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만을 자유로운 이용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 외는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것도 안되고, 그것이 비록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 교육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비추어 본다면 이용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범위나 가정의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 아니라면, 직접 침해자로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은 인터넷의 특성에 맞추어 좀더 세분화시켜 자유이용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우리 저작권법은 자유이용의 폭을 다소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능을 하면서도 자유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스트리밍을 이용한 전송의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인지, 정보이용의 폭을 넓히면서도 저작권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

에서의 자유이용의 범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이용자가 아니라 p2p 방식으로 중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p2p 방식으로 중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자는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감시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냅스터에 대한 미국연방항소심의 판결과 미국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냅스터의 감시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검열로서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음악파일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됩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인터넷의 혈관을 통한 정보의 이동을 자율 내지는 자정기능에 의존하여 정화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제한에 의존하여 정화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커다란 논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물론 인터넷의 혈관을 통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인터넷의 특성은 자율성에 있으므로(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물의 유통때문에 골치를 앓던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고 했으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함에 따라 좌절된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p2p 방식의 서비스 중개자에게 과도한 감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고, 인터넷의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다음으로 이번 토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p2p와 관련하여 소비자 문제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 컴퓨터 범죄의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기업과 같은 단위를 거치므로 규율이 쉬웠는데, p2p에 있어서는 규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번호 : 16
글쓴날 : 2001-04-13 12:24:00
글쓴이 : 남희섭 조회 : 520
제목: p2p와 저작권

p2p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기술적 측면,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법률적 측면.

(1) 기술적 측면

'소리바다'와 '냅스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p2p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네트워크 게임도 p2p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CPU 공유 모델인 분산 컴퓨팅도 기술적으로는 p2p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킹 입장에서 보면, p2p 방식의 파일 교환은 분명 자연스러운 기술적 진보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p2p 기술은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2p의 기술적 의의는 하드웨어 자원의 분산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많은 이용자가 한 서버에 집중되었을 때 생기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여기서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용자 입장에서 p2p는 기존의 웹 기반 검색 엔진에 비해 훨씬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의 이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보의 검색 효율을 높이는 것은 필연입니다. 웹 기반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검색 결과로는 나타나는 정보라도 그 사이트가 없어졌거나 정보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p2p 기술을 이용하면, 정보 수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검색 기능과 입수 기능을 강조한다면, p2p는 기존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FTP 서비스를 합쳐 놓은 모델이 p2p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법률적 측면

저작권법 특히, 저작권을 가지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p2p는 인터넷이 가져온 최대의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보의 교환은 중앙 서버없이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처벌할 대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냅스터와 같은 하이브리드형 p2p 방식은 중앙 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누텔라와 같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p2p 방식은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기술이 초래한 위협은 최대인 반면, 법률이 약속할 수 있는 보호는 최소인 셈이죠.

현행 우리 저작권법상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칵테일' 사건(98가합111554 판결)의 결론에 비추어보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 서버의 기여가 '냅스터'에 비해 더 낮은 '소리바다'의 경우 이런 결론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법적 책임 문제에 비해 p2p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이용자의 침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용자는 2번의 복제를 하는데, 하나는 CD에 있는 음악 데이터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와,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어나는 복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복제 행위는 그 자체로 보면 사적이용이지만 MP3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점에서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사적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내의 복제가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행위입니다.

이처럼 p2p 이용자가 저작권 특히,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비록 많은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일부 사용에만 치중한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이용자는 저작권과 무관한 행위에 그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기나 VCR이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복사기나 VCR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일률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로 규정하고, 이용자들이 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p2p를 이용하는 자들을 침해자로 규정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술의 진보를 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 제도가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작권법이 인터넷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작권법 특히, 복제를 저작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의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적소유권 제도는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불과한 매체가 아니고 거대한 복제기도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새로운 공간이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초법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권리자에게 정보에 대한 물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다는, 불법행위자에게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는, 법률이 강제할 수 있는 통제 즉,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인터넷 환경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소리바다' 사건에서 검찰이 이용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벌성이 낮다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용자의 이용행위를 조사하고 그 경중에 따라 처벌자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번호 : 17
글쓴날 : 2001-04-13 12:25:21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338
제목: [사회자] 정리와 질문

비가 오더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토론도 썰렁해졌습니다. 다시 또 주말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분 모두 p2p와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저작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결론은 인터넷의 특성에 맞게 저작권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 저작권을 그대로 확대시켜 인터넷에 적용하게 된다면, 인터넷의 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용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두 분은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침해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 특히 소리바다는 냅스터보다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분은 p2p라는 '기술의 진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은 기존의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내부의 강력한 반대'라고 보입니다. 관련된 다른 두 분의 의견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최경수 위원과 임학연 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두 분의 의견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우지숙 교수와 전현성 국장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토론은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까지 옮겨왔습니다. 인터넷과 저작권, p2p와 저작권, 냅스터 및 소리바다와 저작권에 대해 대강의 논의는 이루어진 셈입니다. 특히 사회자가 보기에,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를 한 축으로, 최경수 위원과 임학연 계장을 다른 한 축으로 토론의 선이 크게 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측의 의견에 대해 우지숙 교수와 전현성 국장은 어떻게 보는지요?

양정환 님은 사회자의 질문에 아직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평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토론의 진행은 어렵군요. 아무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도 아주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토론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쟁점만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호 : 18
글쓴날 : 2001-04-13 23:10:39
글쓴이 : 우지숙 조회 : 505
제목: 지적재산권과 정보환경

안녕하세요. 우지숙 입니다. 그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논의된 글들을 보니 새삼 제가 덧붙일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짧게 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산권과 인터넷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제도를 그 자체로서 필요하거나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저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거나, 정보를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적재산권은 천부적인 권리는 아니며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난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태동은 많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우리가 이번 토론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정보환경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근대 저작권법의 출현은 인쇄매체의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인쇄매체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글이 생겨나기 전인 구전사회에는 정보의 전달이 암기와 암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를 전달하는 서사시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베꼈다는 지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외우는 것이 관건이었겠지요. 저자의 창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글자가 발명된 이후에는 글을 손으로 베껴 씀으로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긴 글을 똑같이 베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실수로 잘못 베끼기가 쉽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글을 똑같이 베낀다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달성해야 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인 EIsenst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를 짓는 것과 암송하는 것, 글을 쓰는 것과 베끼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자가 누구이며 이 글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논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copy는 나쁘다,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해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누구의 소유다 하는 개념 역시 인쇄매체의 출현이라는 특수한 정보기술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처럼 저작권은 재고의 여지없이 중요한 것이고 기술환경과 정보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은 인쇄매체의 환경과 어떻게 다를까요? 정보를 덧붙이고 빼고 합성하는 것이 쉬울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창조적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글쓰기의 시대와 오히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언어행태를 보면 구전시대와 비슷한 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인쇄 환경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매체의 발달과 이에 기반한 제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전한 저작권법을 인터넷 환경에 그대로 적용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인터젯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논의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환경을 갖기를 원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인터넷 환경에서 무엇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가 정보의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자에게 독점권과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당시에는 필요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의 생산과 재생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저작권보호의 체제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당위성만을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쇄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제한 규정들이 더 확대되거나 다양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정당한 사용 (fair use)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당한 사용과 디지털 환경의 문제, 또 p2p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음 메일에서 논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번호 : 20
글쓴날 : 2001-04-16 13:19:58
글쓴이 : 전현성 조회 : 509
제목: P2P와 지적재산권

안녕하십니까. 한국P2P협회 전현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4월 20일에 있을 '2001 Korea Peer-to-Peer Conference' 행사 준비로 부득이하게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토론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계기로 P2P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P2P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P2P라는 용어보다는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P2P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그 사업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작년 1/4분기를 시점으로 P2P 서비스제품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초고속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이 국내 P2P 산업을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P2P를 응용한 기술은 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쉐어링 서비스는 P2P에 있어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냅스터와 같이 소리바다 역시도 국내 P2P 파일쉐어링 분야에서만큼은 현재까지는 '킬러 앱'(Killer Application)으로 통할만큼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P2P에 대해 느껴온 것들...

우선 모두다 P2P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O'Reilly Peer-to-Peer Conference'에 참석한 후 느낀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국 출장을 가기 전날인 2월 12일, 미국의 The 9th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가 사람들이 음악 파일들을 복제, 유통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냅스터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CNN을 비롯한 세계언론들이 앞다퉈 냅스터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Hot News로 다루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눅스계의 신화로 유명한 밥영(Bob Young) 웨드 햇(Red Hat) 회장은 '냅스터 판결이 P2P산업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P2P기술의 합법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Pure P2P 방식으로 유명한 누텔러(Gnutella)의 진칸(Gene Kan) 역시도 '냅스터 소송의 진정한 패자는 Peer-to-Peer 기술이 아니라 냅스터를 제소한 음반회사들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Peer-to-Peer Networking 기술의 등장으로 P2P산업이 위축되기보다는 더욱더 성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아마도 이번 오랄리(O'Reilly Conference)컨퍼런스에서는 냅스터 판결 이야기만 듣다 오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가서 보고 느낀 첫 느낌은 냅스터 판결에 대해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느낀 것보다 현지 사정이 매우 차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곳에서 만난 숀패닝(Shawn Fanning)이나, 진칸(Gene Kan), 이안클락(Ian Clark) 역시도 냅스터 판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감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숀패닝(Shawn Fanning)은 제게 귀에 대고 'Business는 Business로 풀면 된다'라며, 냅스터가 계속적으로 음반산업 관계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Peer-to-Peer의 비즈니스 영역

우선 이번 오랄리(O'Reilly) 컨퍼런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미국의 P2P 업체들이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협업·지식(Collaboration·Knowledge Management), 파일공유(File Sharing), 컨텐츠 배급(Content Distribution), 인프라·플랫폼(Infrastructure·Platform), 분산검색(Distributed Search) 등과 같이 각각의 P2P 분야를 나름대로 설정해두고, 그에 맞는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수익모델 창출에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O'Reilly P2P Conference에 참가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P2P Business 영역을 잠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냅스터와 같은 파일공유(File Sharing)이외에 최근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주요 업체로는 외계생명체를 찾는 SETI@HOME과 앤트로피아(Entropia)에서 벌이고 있는 FightAIDS@HOME 프로젝트, United Devices 등이 있으며 이 분산 컴퓨팅 기술은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과 같이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P2P 기술이 단순히 개인간 PC의 정보공유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 그리드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은 CPU의 용량을 나눠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최근에는 인텔, 유디(United Devices), 국립암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ancer Research), 미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등이 수백대의 PC를 활용, 암·백혈병과 같은 질병의 치료가능 물질 선별 프로젝트인 '필랜쓰러픽 프로그램'-박애-(Philanthropic Program)을 발표해 바이오테크놀러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협업·지식경영(Collaboration·Knowledge Management)-기업내 KMS 솔루션을 대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방대한 용량의 중앙 서버 없이 사용자들이 각종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PC에 있는 문서정보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음은 물론, 메신저(Messenger) 기능 및 화상회의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로터스노츠(Lotus Notes)로 유명한 뤠이오지(Ray Ozzie)가 만든 그루브네트웍스(Groove Networks Inc.)가 있습니다.

▶컨텐츠배급(Content Distribution)- 컨텐츠전달(Content Delivery)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스트리밍미디어(Streaming Media)서비스 업체나 ASP 공급업체에 매우 유용한 분야입니다. CDN(Content Delivery Network)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에미콜로(EMikolo)가 있으며 DDA(Demand Driven Access)라는 캐싱기술(Caching technology)로 컨텐츠 전달을 향상시키며, 웹사이트 및 호스팅 업체에 캐싱기술(Caching technology)을 판매합니다.

▶인프라·플랫폼(Infrastructure·Platform)- P2P 애플리케이션(Peer-to-Peer Application) 활용을 위한 기본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엑스디그리(XDegrees)가 있으며, 엑스디그리(XDegrees)는 아마존(Amazon.com)에 많은 돈을 받고 팔아 가장 성공적인 벤쳐로 인정받았던 정글닷컴(Junglee.com)으로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P2P 시스템의 핵심 능력은 파일, 리소스,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메타데이터(Metadata)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엑스디그리(XDegrees)는 P2P 네트웍에서 메타데이터(Metadata)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며, 엑스디그리(XDegrees)의 엑스아웃룩(X-Outlook)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파일공유(File Sharing)- 냅스터(Napster), 누텔러(Gnutella), 프리넷(Freenet), 에임스터(Aimster) 등 현재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고있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냅스터와 같이 중앙에 서버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Hybrid P2P) 방식과, 누텔러와 같이 중앙에 서버가 존재하지 않은 퓨어(Pure P2P)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에임스터(Aimster)는 AOL 메신저 기반으로 Peer들에게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 접근을 제한하여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한된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분산검색(Distributed Search)- 분산 컴퓨팅 방식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들이 상호 협동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업체로는 OpenCola가 있으며, Open Cola에는 Smart Folder라는 검색엔진이 있습니다. OpenCola는 PC들이 놀고 있을 때 이들 PC들을 활용하여 스파이더링(Spidering)과 인덱싱(Indexing)을 수행하여 검색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P2P에 대해 여러 비즈니스 영역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의 냅스터와 소리바다 논쟁으로 P2P를 너무 파일쉐어링(File Sharing)으로만 한정해 바라보는 것 같아서입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P2P는 그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파일쉐어링 분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2P의 한 분야입니다. 물론 냅스터와 소리바다가 P2P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냅스터 이외의 다른 P2P 서비스가 냅스터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역시도 현재 400만에 가까운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소리바다'에 대해 얘기하면, Napster와 같은 논쟁이 똑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흥미있어 했습니다. '냅스터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P2P의

대표주자라면, 소리바다는 Asia P2P의 대표주자가 아니겠냐'고 어떤 일본인은 제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냅스터와 저작권에 관한 이슈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법대의 Larry Lessig 교수는 "Napster와 같은 P2P가 오히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하며, "우리가 현행 법률로부터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면 신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찾게될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Lessig 교수는 '만일 Napster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유사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나는 변호사로써 약속합니다. 나는 법률위반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해 기립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독립선언문'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연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던 존 패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에 대해 "냅스터 판결 이후, 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아울러 정보의 독점을 돈과 결부시?객?상상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P2P와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양정환 대표가 그렇듯이 Copyleft를 좇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적창작물에 대한 고유한 권리와 가치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존 패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가 말하는 '정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스톨만(Richard Stallman)의 무료(gratis)와 자유(liberty)를 구분하자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P2P는 소리바다와 냅스터에서처럼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저작권리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P2P기술은 지식산업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와 공동작업을 통해 널리 이롭게 하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비롯한 IT 기반기술 내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상호간의 보호와 보상은 우선 문화적인 성숙도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후쿠야마란 미국의 교수가 'Trust'라는 그의 저술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가족 중심적 문화를 가진 국가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사회간접비용' 지출이 늘어나 비효율적 경영구조를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문화에 대한 시각과 논리전개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편 그가 주장하려했던 문화와 생활에 있어서의 의식수준과 관습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저 역시도 그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보의 활용과 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명 정보에는 그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성숙도에 따라, 정보의 이용!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급정보를 다룰 수 있는 상위의(High Level) 문화와 높은 교육 수준은 정보의 질적 가치를 구분함은 물론 정보가치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국어학자로부터 '정보(情報)'라는 글자의 뜻이 한·중·일 삼국에서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는 말을 듣고 함께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정보의 '정(情)'이라는 글자의 뜻이 더욱 남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모 제과회사의 초코파이 광고에서 우리는 '情'이라는 글자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즉 함께 나눔으로써 가치와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이 우리말의 '정보(情報)'가 다른 삼국에 비해 더 깊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지식정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혼자만 알고, 누군가만이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는 그 정보의 가치는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정보는 함께 공유하고, 가치있는 지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더욱 그 정보의 효용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정보의 가치에 대해 그 가치가 평가를 받고, 그 가치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좋은 정보가 양산(量産)될 수 있고, 그 가치를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책에 있어서도 그 컨텐츠가 담고 있는 내용의 질적 ?痴萬?따라, 보상이 달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는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저는 관련 정보를 받아들이는 다수의 정보이용자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eer-to-Peer의 Peer가 '동료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P2P는 공유문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무차별적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컨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의 가치(Value)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오프라인 상의 정보에 대한 이용가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가치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다루려 함은 다시 제고해야될 부분입니다. 우선 정보를 다루는 속도와 정보의 보급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상의 정보공유보다는 가격경쟁과 경제적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이 훨씬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바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바다에서의 MP3 음악과 기존의 CD에 담겨진 음악과는 음의 질(Quality)에 있어서나, 유통의 속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통구조와 소비행태 만으로 소리바다를 나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리바다는 현행 법률, 현행 유통구조 속에서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의 제도적 장치와 유통구조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리바다는 폐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지불할 수 있는 지식정보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이와 관련한 기존의 기술(DRM, 워터마킹, 보안) 및 새로운 기술들에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Peer-to-Peer 기술이 21세기의 서막과 함께 냅스터(Napster)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P2P라는 기술이 오늘날의 규범과 가치에 어긋난다고 하여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P2P기술은 기존의 네트웍 기술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앞으로의 지식기반 및 네트웍기술에서 오래도록 함께 존재할 기술입니다. 지난 O'Reilly Conference에서 클레이셔키(Clay Shirky)와 팀오랄리(Tim O'Reilly)는 P2P의 미래와 청사진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특히 'P2P를 통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에 대해, 클레이셔키(Clay Shirky)는 냅스터와 AOL인스턴트메신저(Instant Messenger)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앙집중현상(Centralization)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P2P애플리케이션(P2P Application)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서비스된다면 P2P애플리케이션의 세계는 붕괴될 뿐만 아니라 퍼블릭리소스(Public Resource)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통제하는데 있어 난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하는 일은 범죄가 아니다"고 말하며, 정부!의 태도와 방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얘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일에 대해 정부가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55마일의 제한속도에서 묵시적으로 60마일까지 운전하는 것을 위법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P2P 기술이 지식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활용기술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독점을 막고 유용한 정보를 함께 널리 공유함으로써, 지식정보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 컨텐츠의 질적 가치를 구분하고, 저작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P2P 기술에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대한 보상체계도 일정 부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존의 법률과 제도만을 고집하며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로의 이행과정을 구태의 사고에서 분리시키지 못한다면, 끝없는 논쟁과 불필요한 비용지출로 오히려 지식정보의 활용속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P2P는 쌍방향 지식정보교류의 훌륭한 활용무대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이 무대 위에서 남에게 도용되어 침해될 수도 있겠지만, 침해 사례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장(場)'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P2P를 통해 기존의 받기만 하던 수동적 정보 습득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보공유의 활용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양질의 고급정보를 그에 맞는 보상을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된 정보거래문화도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거래에 대한 보상이 꼭 물질적인 것(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얻어야 하는 지식정보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전문 지식 분야에 대해 쌍방향 교류와 교환을 통해 지적 재산에 대한 새로운 보상체계를 적립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소리바다를 포함한 P2P기술을 좀 더 유용한 지식정보의 활용수단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2P나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기술에 대해 그 유용성 및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식정보 거래에 필요한 올바른 활용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번호 : 21
글쓴날 : 2001-04-16 18:49:55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302
제목: [사회자] 새 주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원주로 오는 길에 보니 산의 빛깔이 사뭇 달라지고 있더군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분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피라이트라고 다 같은 카피라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좀더 깊은 토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성님과 양정환님은 카피라이트의 견지에서 p2p의 수익모델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덧붙여서 기존의 카피라이트가 기술 발달의 추세와 상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피라이트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나요?

같은 카피라이트지만 최경수님과 임학연님은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수님은 기술이 변한다고 카피라이트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고한 견해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임학연님도 소리바다는 카피라이트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두 분은 전현성님과 양정환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경수님은 제가 지난 번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터넷이 카피라이트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황희철 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WIPO 신저작권이나 WTO/TRIPs가 단순히 베른조약과 파리조약의 연장일 뿐일 것인지 입니다.

주가 바뀌었으므로 예정된 새로운 토론 주제를 제시합니다. 어느새 토론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 주제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p2p를 둘러싼 논쟁이 음악 분야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전망입니다. 특히 영화와 게임이 이와 관련될 것 같은 데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둘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조치들이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주제를 올리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번호 : 22
글쓴날 : 2001-04-19 14:29:30
글쓴이 : 최경수 조회 : 628
제목: copyright인가, copyleft인가?

먼저, copyright니 copyleft니 하여 집단을 구별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본인의 주장이 어느 한 쪽에 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입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양자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하나의 제도로서 수백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리 잡은 개념이고, 카피레프트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 내지 캠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작권 제도는, 다른 지적재산권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이란 사회 성원의 합의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한 연후에 다른 제도의 성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줄 압니다.

둘째로,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의 결과 등장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 "정

보는 공유이다"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 전개되는 운동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Linux로 표방되는 GNU 운동이 그렇습니다.

셋째로, 저작권이 아닌 다른 제도의 대체 주장은 학문적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 제반 학문적 검토를 거친 후에 지적재산권 제도의 용도 폐기 여부를 검토해야지 새로운 기술이 하나 등장했다고 하여 기존 법률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물론 새로운 사회적, 법적 파라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론적인 논쟁 거리라 견강부회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파라다임이 요구된다 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기존 제도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10여년 전에 마감한 '논란거리'일 뿐입니다.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서구의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 역사, 문화, 수학 등등... 우리 학문이라고는 국어 정도... 그것도 서양이론을 도입한 국어학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 제도도 물론 서양 문물입니다. 심지어 카피레프트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서구의 제도가 옳지 않다면 우리의 사고도 거침 없이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저에게 제기되었던 논점을 일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베른협약 등이 한계를 보인다는 점...

베른협약이 살아 있다는 것은 7차례 가량 개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것은 100년이 훨씬 지난 1995년이었습니다. WIPO 저작권조약이 나온 것은 베른협약 개정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 것이지 그것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작권조약에서도 베른협약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일부 조항은 베른협약 조항들을 '베끼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꿋꿋합니다. 베른협약과 WIPO 저작권조약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각국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생생한 조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2. 기존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에 대하여...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말하기는 무척 쉽습니다. 기술 선진국도 그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이 일부 있었으나 이제는 제도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본다면, "쑥"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사회학적, 경제학적 접근에서 출발해야지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만을, 그리고 다른 접근법에 앞서 주장한다면 사안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봅니다.

번호 : 27
글쓴날 : 2001-04-20 22:10:00
글쓴이 : 우지숙 조회 : 470
제목: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우지숙입니다. 최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굳이 답변을 하라 하시니 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가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전개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카피레프트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따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카피레프트는 오히려 카피라이트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제도의 목적과 존재이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영되어지는 형태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작권법은 정보의 생산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보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풍부히 하고 공익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이 탄생한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맞추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들이 저작권법의 각 조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매체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조항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입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새로운 매체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진정으로 저작권의 근본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일수록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저는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진정한 카피라이트는 카피레프트의 수단을 어느 정도 받아들임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작권이 아닌 다른 제도의 대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일 저작권제도의 변형과 발전에 대한 주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메인스트림의 입장만이 학문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학, 경제학 등의 연구방법을 빌린 글들의 경우 인터넷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카피레프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분야에서 이러한 법외적인 고려를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오히려 미지수이지, 저작권을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보는 입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환경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 언론학 등의 분야에서는 법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갖고 탄생한 상대적인 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기존제도의 문제점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저작자에 주는 독점권과 저작물 보호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저작권의 시효를 줄인다든지, 정당한 사용의 원칙을 인터넷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제도의 대안보다는 기존 제도를 지나치게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예를 들면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조항을 저작권 내에 넣으려는 시도 등) 방어적인 주장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보다도 학자적, 시민적 양심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른협약, WIPO 조약 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이러한 조약들이 반드시 현재의 환경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조약들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어느 국가의 입장과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제도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되는 이용자들의 입장이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WIPO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 뿐 아니라 저작권자, 서비스제공자, 망제공자 등으로 나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대표가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성립되는 모든 국제조약들이 무의미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국내외의 법제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두서없이 쓴 저의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번호 : 28
글쓴날 : 2001-04-21 13:33:49
글쓴이 : 남희섭 조회 : 321
제목: Re: copyright인가, copyleft인가?

최위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의 합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목적에 대한 합의의고, 다른 하나는 수단에 대한 합의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목적에 대한 합의'이고, 이를 위해 창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수단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누구도 '목적에 대한 합의'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단에 대한 합의'의 적절성을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에 대한 합의'는 부차적인 합의이고, '목적에 대한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매우 제한적인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재산권을 가지는 것은 유형물에 대해 인정되는 재산권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과 달리 그 옷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새로운 사회적, 법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단에 대한 합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두고, 이미 외국에서 마감된 논란거리일 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논쟁거리로 치부하는 태도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이고, '목적에 대한 합의'와 '수단에 대한 합의'를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저는 최위원님이 맨처음 올리신 글에서 '누구 하나 자신있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목적에 대한 합의'를 사이버공간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얘기되는 장소로 이번 토론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국제조약입니다. 베른협약과 WIPO 저작권 조약이 한덩어리가 되어 각국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생한 조약'이라고 보신 최위원님의 입장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조약이야말로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결론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번호 : 23
글쓴날 : 2001-04-19 14:53:45
글쓴이 : 최경수 조회 : 304
제목: 암호화 등

1. P2P가 새로운 장르의 저작물에 확대 적용되어, 더욱 복잡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분야의 저작권 문제 해결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 또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굳이 사족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2. 기술조치(technological measures)는 이미 WIPO 저작권조약에서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무척 중요합니다. 조약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래 의장 초안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술 수준으로 보거나 저작권 보호 의식으로 보거나 만족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의장 초안을 무척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규정이 나온 것이고 정부는 이 규정에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분간 숨쉴 여유를 가진 셈이니까요. 기술조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는 매우 기술적이고 법적인 논쟁을 제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한다면, 기술조치는 권리자가 자력구제(self-help)의 방법으로 강구하는 접근통제 내지 이용통제 장치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권리자는 보다 확실한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정보까지 암호화의 방법으로 쓸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법률 규정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점 권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술자가 함께 만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 권리자나 소비자의 의식이 이를 해결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매를 맞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감은 나무에서 그냥 떨어질는지 몰라도 권리자나 소비자의 권익 내지 이익은 누가 거져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자기 권익을 정부가, 제3자가